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려시대 六窯의 성격과 운영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조 형 근

2014년 2월

고려시대 六窯의 성격과 운영

지도교수 全 暎 俊

조 형 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조형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위 원_____인

위 원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2월

Nature and Operation of Yukyo (六窯, Six Kilns) System
during the Goryeo Dynasty

JO HYEONG-KEUN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Nature and Operation of Yukyo (六窯, Six Kilns) System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Goryeo government set up Jeyojik (諸窯直, a government office managing various roof tile kilns) taking charge of roof tile produc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Munjong in order to govern the roof tile demand and supply of royal palaces, temples and government offices in Gaegyeong. The Jeyojik was reorganized to Yukyojik (六窯直, government office managing six roof tile kilns)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as *GwonmuGwanrok* (權務官祿) was revised.

To date, various opinions on Jeyo (various kilns)/Yukyo (six kilns) have been presented in the academia, due to limited historical records; however, they have shown only limited point of views in the framework of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So, 所) handicraft industry system, rather than institutional and social studies. In this context, the examination of Jeyo and Yukyo may have a significance, given that such an examination can look at the roof tile industry in the Goryeo Dynasty anew. To identify the nature of Jeyojik and Yukyojik recorded in *GoryeoSa* (高麗史), *SikhwaJi* (食貨志) and *BackgwanJi* (百官志), a framework for analysis to trace the laxity process of the production system in the latter part of the Goryeo Dynasty is needed, after this study defines their terms and reviews their operation modes.

Consequently, Jeyojik was identified as a government office of various kilns

and Yukyojik was identified as a government office of six kilns. Their roles were to be in charge of roof tile production required in Gaegyeong. The Jeyojik and Yukyojik were grasped to be included in the state's formal stipend system and as belong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system, according to *GoryeoSa and SikhwaJi*. This paper ascertains that roof tile production system during the Goryeo Dynasty was organized within the government handicraft industry but was separately operated from the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So, 所) handicraft industry. Demand and supply for roof tiles is conjectured to have been managed through Yukyo(六窯) in Gaegyeong and through Waso(瓦所, Roof Tile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in other local areas. This means a dualistic roof tile production system and also actively reflects the roof tile kiln industry's characteristics, of which production and supply are conducted around the demand sites.

The roof tiles produced from Yukyo were mainly used for construction controlled by the state and also functioned as production facilities of Dogam(都監), an ad hoc organization, or SeonGongSi(繕工寺), a regular government office. A possibility that roof tile making artisans, who were forced to work at six kiln sites, received separate stipend or sold some of the roof tile products in the market was also confirmed. Since then, the shrinkage of government's financial base, due to the invasion of Mongolia and a sharp decrease in land from which taxes are collected, relaxed the Yukyo system. With this, a private kiln prohibition order cancellation, privately-operated roof tile kiln's appearance and roof tile marking artisan's private activities accelerated. The roof tile production system was, therefore, reorganized into a different system from the one in the former part of the Goryeo Dynasty, due mainly to an expansion of temple handicraft industry organizations.

- 目 次 -

Abstract

I. 序論	1
1. 연구목적 및 배경	1
2. 연구 성과 검토 및 연구방법	4
II. 六窯의 성격과 역할	8
1. 諸窯와 六窯의 성격	8
2. 六窯의 역할과 이원적 기와생산체제	17
III. 六窯의 운영과 解弛	24
1. 六窯의 운영과 瓦匠의 位相	24
2. 六窯의 해이와 私營瓦窯의 등장	33
IV. 結論	48
參考文獻	50

<표 목차>

<표 1> 諸司都監各色條 상의 諸直 설치와 해당관서	11
<표 2> 태조~문종 연간 개경 인근 조영활동	17
<표 3> 문종~인종 연간 개경 내 화재 및 불사	20

I.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고려시대의 수공업 체제는 관영수공업과 所수공업, 寺院수공업, 민간수공업 등 다양한데,¹⁾ 고려 정부는 중요한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所에서 생산하거나 민간에서 구입 혹은 수취하는 방식을 취했다. 관영수공업의 생산품으로는 왕실 및 관청의 수요품과 외국 사신의 답례품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는 관영수공업은 물론 所·사원·민간수공업의 생산품을 조달하는 방식이 필요하였다.

특히 기와는 고려 전시대에 걸쳐 그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하였다. 때문에 일정한 방식으로 중앙 필요처에 공급되었을 기와의 생산 체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경향은 다양한 편이다. 전국 각지의 瓦所에서 생산하여 공납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²⁾ 있는 반면에, 瓦窯業을 관영수공업으로 분류하여 전국의 瓦所를 관리했을 것으로 파악하기도³⁾ 한다. 공통적으로는 瓦所생산체제를 전제하고 있음도 특징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瓦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⁴⁾ 고려시대의 기와수취가 瓦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앙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 연구는 『高麗史』 「百官志」 諸司都監各色條와 「食貨志」 祿俸條에 기록된 諸窯直과 六窯直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관직명으로 보아가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그 성격과 기능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諸窯·六窯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1) 서명희, 「수공업」,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2) 이정신,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2007, 73쪽.

3)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復刊, 86-90쪽.

4) 고려시대의 瓦所로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사료는 『世宗實錄』地理志에 나오는 ‘栗谷瓦所’가 유일하다(『世宗實錄』地理志, 충청도 청주목 영동현).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瓦所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명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경기 여주목 고적. “今按 新羅建置州郡時 其田丁戶口 未堪爲縣者 或置鄉 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 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 銀所 銅所 鐵所 絲所 紬所 紙所 瓦所 炭所 鹽所 墨所 藿所 瓷器所 魚梁所 薑所”).

가 나뉘는데, 홍희유는 諸窯와 六窯를 구분하여 諸窯는 고려청기와를 비롯해 기와를 생산하는 瓦所의 중앙통제기구이고 六窯는 고려자기를 생산 공급하는 瓷器所의 중앙관청이라고 주장한다.⁵⁾ 김영진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⁶⁾ 반면 서성호는 諸窯와 六窯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官窯시설로 파악하고 있다.⁷⁾ 한성욱도 제요와 육요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기소를 관리하는 관사로 이해했다가,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⁸⁾ 이정신은 문종대의 諸窯가 인종대에 와서 이전의 숯·자기·도기·기와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공납물의 생산을 관장하는 六窯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⁹⁾ 홍영의는 제요직의 구체화된 모습이 육요직이며 기와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개경 인근에 육요의 위치를 비정하였다.¹⁰⁾ 이는 수요지 부근에 설치되는 와요의 특성을 반영한 견해로서 주목된다. 이렇듯 諸窯와 六窯에 대한 연구자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요와 육요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고려시대 瓦窯業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기와는 궁궐과 관청, 그리고 각종 사찰 등을 건립할 때 반드시 필요하였다. 때문에 고려 정부는 기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공업체제를 꾸준히 정비하여 갔다. 특히 궁궐이나 관청 조영시의 기와수급을 위한 와요업의 六窯체제 정비는 개경에서 활용되었고, 지방에서는 所나 寺院 등에서 기와를 충당하는 二元的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瓦窯業은 여타의 수공업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기와가 필요한 수요지 부근에 와요를 설치하여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와는 건축 조영에 있어서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장거리운송에 어려움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었다. 고려시대 중앙의 六窯나 지

5) 홍희유, 앞의 책, 1989, 89쪽.
 6)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춘추각, 1995, 98쪽.
 7) 서성호,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7, 22쪽, 105-106쪽, 120쪽.
 8) 한성욱은 제요직(혹은 육요직)이 자기소 등을 관리하며 공납받은 도자를 왕실 등 수요층에 공급했던 관사로 이해하였다(한성욱, 「강진청자의 생산과 유통」, 『청자보물선 뱃길재현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움』, 2009, 120쪽), 이후 『練藜室記述』의 “瓦署 … 高麗諸窯直”(『練藜室記述』 별집7, 官職典故, 諸司條) 기록을 인용하여 주장을 철회했다(한성욱, 「康津 靑瓷의 生産과 流通」, 『문화사학』 34, 한국문화사학회, 2010, 100쪽).
 9) 이정신, 앞의 논문, 2007, 75쪽.
 10) 홍영의, 「개경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窯場」,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323쪽.

방의 각종 생산 체계는 이를 반증하는 사례이지만, 고려 전 시기에 걸친 長城 수축이나 많은 건축 수요에 따르는 기와의 수급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瓦窯業의 특성은 여타의 窯業인 도자기 등의 품목과 차별되며, 이의 생산과 공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고려시대 六窯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즉, 고려시대의 瓦窯業은 所수공업체제로 一元化되었던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二元的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에서 건축 과정에 꼭 필요한 물품의 조달방식을 파악한다는 점에 의미를 갖는다. 私營瓦窯의 등장과 瓦匠의 賃勞動 현상, 그리고 사원수공업 발달의 원인에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고려후기에는 생산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원적 생산체제가 여전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전란과 각종 폐단은 所수공업의 解弛를 가속화시켜 官需用 물품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궁궐을 복원하기 위해 개경의 六窯체제를 일부 복구하여 기와를 생산하지만 한계는 여전히 있었고, 급기야 시장에서 관수용 물품을 구입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六窯의 생산력만으로 기와의 수급을 조절할 수 없었던 정부가 결국 私窯 設置 禁令을 해제하여 민간의 기와생산을 허용하기도 하였다.¹¹⁾ 또 세금이나 부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권세가 혹은 사원에 투탁하는 공장들도 생겨났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폐단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반면에 공장들이 사원에 속하게 되면서 사원수공업은 양적·질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조선 건국 초기에 진행되었던 도성건설 과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¹²⁾

특히 와요는 그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자 외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여기에 더하여 고려시대 사원의 수만 3,000여 곳을 상회한다는 연구 성과를¹³⁾ 참고하더라도 사원에서의 기와 수요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개경과 각 지방의 관아 등에 기와가 사용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와요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

11)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元年. “八月 辛亥 王命令富人 就宣義門內閑地 緣道作瓦屋 又命五部民家 皆蓋以瓦 命毋禁私窯.”

12) 全映俊,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2004, 111-121쪽.

13)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서론.

한 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와 생산 방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의 실재를 확인하고, 고려후기 六窯體制의 붕괴와 관영수공업체제의 解弛 현상이 가져온 기와생산체제의 변동을 파악하여 고려시대의 기와 생산과 공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성과 검토 및 연구방법

지금까지의 瓦窯業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고려시대의 와요업 연구는 수공업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¹⁴⁾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사료의 부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에 직접적으로 기와를 언급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그나마도 災異와 관련된 현상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에 수행되었던 성곽 수축이나 각종 건축 과정에 필요한 기와의 생산 수급이 다반사의 일이라는 특징도 있겠지만, 생산 기술이나 와장 등의 존재 양상이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점에도 있다.

또한 고고학적 접근도 시도되고 있으나 주로 기와의 제작기법·형태·문양·편년 등을 고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¹⁵⁾ 瓦窯業의 설치와 운영 등 사회적·제도적인

14) 수공업을 다루면서 瓦窯 혹은 瓦匠을 언급한 연구는 다음이 참고 된다.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復刊; 이호열, 『朝鮮前期 住宅史 研究』,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1991; 서성호,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7; 이혜옥,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송성안, 『高麗後期の 寺院手工業 研究』,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1999; 전영준,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4; 이병희, 『고려 후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8.

15) 윤용희, 『남한강유역 출토 고려 전기 평기와 고찰 : 驪州 元香寺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史林』 20, 수선사학회, 2003; 이훈, 『와요의 구조형식변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1996; 崔英姬, 『江原地方 高麗時代 平기와에 관한 研究』, 『文化史學』 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김성진, 『조선전기 경남지역 와요 및 평기와의 전개양상』,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4; 이동준, 『남양주 와요지 출토 조선시대 평기와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4; 최태선, 『고려시대 기와연구의 성과와 과제 : 평기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 한국기와학회, 2005; 유용수, 『경기지역의 조선시대 기와가마 연구: 평택 칠원동 기와가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2005; 최정혜, 『고려시대 기와의 지역색 검토 : 미륵사와 황룡사 막새를 중심으로』, 『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 한국기와학회, 2006; 이인숙,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고고학』 6, 중부고고학회, 2007; 김지윤, 『原州地域 高麗·朝鮮時代 平기와 研究』, 『강원문화사연구』 1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8; 오준정, 『강원지역 조선시대 와요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9; 손호성·류지현, 『영남지역 와요에 관한 연구』, 『경주사학』 31, 경주사학회, 2010; 김경미, 『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2011; 이수경, 『영산강유역

접근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까지 수공업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겠다. 고려시대 所의 역할이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데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경향으로 수공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수공업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1990년대 초반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¹⁶⁾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⁷⁾ 특히 직물·종이·금속 등 국가 경영의 기간산업 역할을 하는 품목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반면, 와요업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李貞信은¹⁸⁾ 고려시대 瓦窯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所수공업 체제에 주목하여 고려시대 기와의 생산체제를 瓦所생산체제로 이해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 보문사지, 강진 현산리 가마터, 대전 구완동 요지 등 몇 가지 발굴 사례를 제시하여 瓦所의 존재를 추적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瓦所에서 기와를 공납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와가 지방 所에서 그 인근의 수요지로 공납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어골문 유형의 타날판을 사용함으로써 고려 전 시대의 기와문양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지는 수요지 근처에 설치되는 와요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所수공업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 향파두리 토성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곽지촌’, ‘고내촌’ 銘 기와에서도 그 가능성을 볼 수 있겠

의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湖南考古學報』 40, 2012; 김경탁, 「개성 고려궁성 출토 막새기와 고찰」,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박성진, 「고려궁성 출토 평기와의 속성 분석」,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장남원, 「개성 고려궁성지 출토 도자기」,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16) 1990년대 초반에 개별 수공업 분야에 집중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徐明禧, 「高麗時代 鐵所에 대한 研究」, 『한국사연구』 69, 한국사연구회, 1990; 전병무, 「고려시대 은유통과 은소」,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1992; 위은숙, 「고려 후기 직물수공업의 구조변동과 그 성격」,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17)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개별 수공업 연구는 다음과 같으며, 所 체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빈도가 높다. 이정신, 「高麗時代 종이의 생산 실태와 紙所」,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이정신, 「高麗時代의 漁業 實態와 魚梁所」,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1998; 이정신, 「고려시대 茶생산과 茶所」, 『한국중세사연구』 6, 한국중세사학회, 1999; 이정신, 「고려시대 銅의 사용현황과 銅所」,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2006; 이정신, 「고려시대 금은채굴과 금소·은소」, 『역사와담론』 57, 호서사학회, 2010; 전영준, 「조선전기 관찬지리지로 본 楮·紙 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11; 「박종기,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所 生産體制」,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8) 이정신, 앞의 논문, 2007.

다.¹⁹⁾ 때문에 고려시대의 기와생산은 중앙인 개경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홍영의는²⁰⁾ 『高麗史』 「百官志」와 「食貨志」에 기록된 ‘諸窯直’과 ‘六窯直’이 기와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소속된 관원은 개경 인근의 기와수취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瓦所를 통해 기와가 공급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수요지 근처에 설치하는 와요의 특성을 반영한 견해로 생각된다. 또한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기와의 명문을 생산지로 추정하고 이를 六窯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경 근처의 瓦窯 위치를 비정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六窯가 기와생산시설인 와요였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사회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강만길,²¹⁾ 황의수,²²⁾ 정치영,²³⁾ 최문환²⁴⁾ 등의 연구가 참고 된다. 강만길은 조선 초기 別瓦窯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와요업 연구의 제도사적 기반을 닦았으며, 황의수는 기술사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정치영은 『高麗史』와 『東文選』 및 기타 문집류 등에 나타난 기와수급 사례를 분석하여 고려·조선전기 기와의 조달양상을 자체생산·구입 후 주문생산·재활용 등으로 정리하여 이를 도식화했다. 시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각 사료에 대한 시점분석이 부족했다는 한계점도 보인다. 최문환은 기와 유통에 대한 관심을 고고학적 근거로 규명하여 조선전기 기와 가마가 대체로 수요지 부근에 설치되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였다. 이는 교통이 더욱 좋지 않았던 그 이전 시기, 즉 고려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2, 52쪽, 55쪽;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발굴조사 1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3, 27쪽, 39쪽.

20) 홍영의, 「개경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窯場」,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21) 강만길, 「別瓦窯考 - 朝鮮時代の 製瓦業발전」, 『史學志』 1, 단국사학회, 1967.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별와요의 官營·私營의 성격에 관한 논의이다. 그는 『朝鮮王朝實錄』 중 조선전기 와요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別瓦窯에 관한 기사를 정리하여 그 운영을 살펴보았다. 그의 견해는 별와요가 시기에 따라 관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사영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다가 경국대전 체제가 완성되면서 관영으로 흡수되었다고 보았다.

22) 황의수, 「조선시대의 정책」, 『조선기와』, 대원사, 1990.

23) 鄭治泳, 「高麗~朝鮮 前期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 중부고고학회, 2006.

24) 최문환, 「조선시대 기와유통 연구 - 가마의 위치와 운송을 중심으로」, 『史學志』 42, 단국사학회, 2010.

이러한 연구 성과에 유의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의 제요·육요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것이 고려시대의 官營瓦窯였음을 증명하겠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수공업체제 운영 방식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및 여러 문집에 나타난 사례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諸窯·六窯의 실체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高麗史』 등의 관찬사서에는 기와의 수급을 알아볼 수 있는 기사와 諸窯·六窯 관한 사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간접사료를 이용하여 諸窯·六窯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東文選』 등에 수록된 문집류와 후대의 기록이라도 참고할 만한 사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고려시대 諸窯·六窯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연구 범위를 제한하겠다.

III장에서는 II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六窯의 운영에 대해 고찰하고 瓦匠의 위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고려후기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六窯가 해이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후 私營瓦窯가 등장하면서 瓦匠의 활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하겠다. 이를 위해 『高麗史』와 각종 문집류에 나타난 모습들을 시대적인 상황에 대입하여 해석하고, 특히 六窯의 해이로 인한 瓦匠의 賃勞動현상을 규명하여 고려후기 기와생산방식의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려시대 六窻의 성격과 역할

1. 諸窻와 六窻의 성격

고려시대의 窻業과 관련하여 諸窻直과 六窻直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 「百官志」 및 「食貨志」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諸窻直. <丙科權務>.25)

② 권무관의 祿은 문종 13년에 정하였다 … 8석 10두 <연덕·흥경 등 제공녹사, 동서대비원·제위보·태상부·동문원·서적점·도염원·급전도감 녹사, 제기노부도감·동서재장 판관, 제신묘직, 신당·울포직, 제요직, 구요당직, 제목감직, 연우·안창택전, 북창·경창원전, 제전수호원> 8석 <제단직·궁직·전직·능직, 장원정직, 순천관직, 삼사중감> 7석 <제진전직> 6석 <구복원 중감> 이었다.26)

③ 인종조에 다시 정하였다 … 8석 10두 <비서교감, 태상부·동문원·서적점·제기노부도감·급전도감·동서대비원·제위보 녹사, 창악·승경 등 제공 녹사, 동서재장 판관, 육요직, 제목감직, 도염원·연우택·아전택·안창택·경창원·북창원·만령전 전, 제릉직>이다.27)

「食貨志」 규정에 따르면 諸窻直은 丙科의 權務이며 8석 10두의 녹봉을 지급받았다. 諸窻直은 1076년(문종 30) 權務官의 녹봉이 정해질 때 함께 제정되었고, 이는 다시 인종조에 정비될 때 諸窻直에 대신하여 六窻直이 정의되고 있다. 다시 보면 제요직 또는 육요직이 국가의 공식 녹봉체제에 편제되어 있으면서 중앙정

25) 『高麗史』 권77, 百官2, 諸司都監各色.

26) 『高麗史』 권80, 食貨3, 祿俸條, 權務官祿. “權務官祿 文宗三十年 定 … 八石十斗 <延德 興慶等 諸宮 東西大悲院 濟危寶 太常府 同文院 書籍店 都塩院 給田都監 錄事 祭器鹵簿都監 東西材場判官 諸神廟直 神堂栗浦直 諸窻直 九曜堂直 諸牧監直 延祐安昌宅 福昌景昌院典 諸殿守護員> 八石 <諸壇直 宮直 殿直 陵直 長源亭直 順天館直 三司重監> 七石 <諸眞殿直> 六石 <勾覆院重監>”

27) 『高麗史』 권80, 食貨3, 祿俸條, 權務官祿. “仁宗朝 更定 … 八石十斗 <秘書校勘 太常府 同文院 書籍店 祭器鹵簿 給田都監 東西大悲院 濟危寶 錄事 昌樂承慶等諸宮錄事 東西材場判官 六窻直 諸牧監直 都塩院 延祐宅 衙典安昌宅 景昌福昌院 萬齡殿典 諸陵直>”

부의 관직체계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가 정한 녹봉이 문종대나 인종대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최초의 관직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하며, 국가경영에 꼭 필요한 대상이었음을 확인하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의 窯業에 관한 기사가 위에 제시한 사료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諸窯·六窯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제요와 육요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정리가 필요하다. 첫째, 우선 용어의 개념이다. 諸窯直을 ‘여러 요의 직’ 혹은 直長, 官廳의 개념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청으로 볼 것인지, 관직명으로 파악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六窯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제요가 모든 종류의 窯業을 포함하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諸窯에 대해서는 유사한 용례를 통해 볼 때, ‘여러 개의 가마’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고려묘지명』에서 諸窯直과 함께 확인되는 여러 용례 중 諸陵直·諸眞殿直·諸牧監直 등의 관직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릉직은 成陵直²⁸⁾·戴陵直²⁹⁾·順陵直³⁰⁾·康陵直³¹⁾·景陵直³²⁾·懷陵直³³⁾·延陵直³⁴⁾ 등과 같이 다양한 용례가 있다. 諸眞殿直도 玄化寺眞殿直³⁵⁾·天和寺眞殿直³⁶⁾·泰雲寺眞殿直³⁷⁾ 등의 용례가 확인된다. 諸牧監直은 龍驤·隴西·銀川 등 10여 개의 목장과³⁸⁾ 함께 隴西牧監直³⁹⁾·江陰監牧直⁴⁰⁾이 확인된다.

28) 「崔忠獻 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始以門蔭 散補良醞令 旋拜成陵直”

29) 「李齊賢 墓誌銘」, 위의 책, 2012. “公諱齊賢 … 僕射生 檢校政丞 諡文定諱瑱 娶戴陵直朴仁育之女 辰韓國大夫人”

30) 「□純誠 墓誌銘」, 위의 책, 2012. “大定中 執政疾病 邀君徑之□效相府直 聞之表授順陵直”

31) 「金仲龜 墓誌銘」, 위의 책, 2012. “公小有風度觀之者 皆慕其爲人稱 有宰輔之器年少以大明昌五年甲寅 起家補康陵直”

32) 「蔡仁揆 墓誌銘」, 위의 책, 2012. “公嫺牛峰郡人 僉議贊成事上將軍崔公瑛之女 生子九女一男一女 … 六女適景陵直李焯”

33) 「鄭仁卿 墓誌銘」, 위의 책, 2012. “公先娶 禮賓尹陳琇之一女 生一男曰琛今爲僉議舍人 後娶其二女 生四男二女 … 曰信綏今爲懷陵直”

34) 「崔瑞 墓誌銘」, 위의 책, 2012. “甲寅春初得 官於江華判官 是年擢第 乙卯冬調延陵直 丙辰秋爲秘書校勘”

35) 「林景和 墓誌銘」, 위의 책, 2012. “公娶宋□ 判將作監事宋公之女也 … 女三人 長嫡 玄化寺眞殿直金適柔”

36) 「金承用 墓誌銘」, 위의 책, 2012. “公以門資 年方十四直 調天和寺眞殿”

37) 「尹之彪 墓誌銘」, 위의 책, 2012. “公 延祐庚申 公年十一而補 泰雲寺眞殿直”

38) 『高麗史』 권82, 병2, 馬政. “諸牧場 龍驤<黃州> 隴西<洞州> 銀川<白州> 羊欄<開城> 左牧<貞州> 懷仁<淸州> 常慈院<見州> 葉戶峴<廣州> 江陰 東州”

즉 여러 능직과 진전직, 목감직 등을 아울러 지칭했던 것이 제릉직, 제진전직, 제 목감직이었다.

제요직 역시 박화의 묘지명에서 확인되는데 板積窯直이⁴¹⁾ 그것이다. 窯直도 다양하게 실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입하면 제요직은 여러 窯의 直을 아울러 이르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사』 「백관지」 諸司都監各色條에는 권무관직으로 諸宮殿官, 諸館直, 諸壇直, 諸神廟直, 諸亭院直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이들은 비록 하위관에 속하지만 엄연히 전시과의 녹봉체제에 편입되어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였고 볼 수 있으므로, 제요직 역시 여러 窯에 파견되거나 여러 요직을 통칭하는 관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려사』 「식화지」의 서술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요직과 같은 8 석 10두의 녹봉에 포함되는 다른 관직을 보면 ‘延德興慶等諸宮·東西大悲院·濟危寶·太常府·同文院·書籍店·都鹽院·給田都監의 錄事’⁴³⁾라고 기술되어 있다. 동시에 祭器鹵簿都監·東西材場의 判官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서⁴⁴⁾ 그 대상이 관청이 아니라 관직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제요직 역시 중앙의 녹봉을 직접 지급받는 관직을 말하는 것으로, 제요직이 관리계층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다만 여기에서는 제릉직·제진전직·제요직·제목감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9) 「趙延壽 墓誌銘」, 위의 책, 2012. “年甫九歲以門資 初調隴西牧監直”

40) 「金台鉉 墓誌銘」, 위의 책, 2012. “十五一舉司馬試中魁 明年又赴禮闈□進士 丁丑□除江陰監牧□”

41) 「故密直副使致仕朴公墓誌」, 『東文選』 묘지. “至元十五年 由典理司書員 任全州 臨陂縣尉 罷秩入內侍積年勞 歷板積窯直供驛司醞署令紫雲坊判官”

42) 『高麗史』 권77, 百官2, 諸司都監各色. “諸宮殿官 <權務 文宗置 使 副使 判官 或置 使 副使 錄事 或只置直 或只置錄事 恭愍王罷使餘並仍之> … 諸館直 <雜權務> 諸壇直 <雜權務> 諸神廟直 <雜權務> … 諸亭院直 <權務>”

43) 『高麗史』 권80, 食貨3, 權務官祿. “八石十斗 延德興慶等諸宮 東西大悲院 濟危寶 太常府 同文院 書籍店 都鹽院 給田都監 錄事”

44) 『高麗史』 권80, 食貨3, 權務官祿. “祭器鹵簿都監 東西材場 判官”

<표 1> 『高麗史』 「百官志」 諸司都監各色條 상의 諸直 설치와 해당 관서

권무관 (문종30)	권무관 녹봉		설치내용	해당 관서	백관	품계	更定田柴科 (문종30)			
	문종 30년	인종 조					科	田地	柴地	祿俸
제릉직 (雜權務)	9科 (8石)	9科 (8石 10斗)	昌陵(王隆)·顯陵(태조)·貞陵(神成王太后)·壽陵(神靜王太后)·順陵(혜종)·安陵(정종)·憲陵(광종)·榮陵(경종)·元陵(현정왕후)·泰陵(대종)·康陵(성종)·幽陵(현애왕태후)·恭陵(목종)·義陵(목종)·乾陵(안육)·宣陵(현종)·和陵(원정왕후)·明陵(원성왕후)·懷陵(원혜태후)·宜陵(원평왕후)·肅陵(덕종)·質陵(경성왕후)·周陵(정종) - 문종대까지	諸陵署	승 1인	종5품	10 科	50 結	15 結	60石
					丞 2인	종7품	13 科	35 結	8 結	22石 5斗
제진전직 (雜權務)	9科 (7石)	-	安和寺眞殿 - 一作帝建, 930년(태조13)낙성	-	-	-	-	-	-	-
			奉恩寺眞殿 - 太祖願刹, 951년(광종 2)							
			乾元寺眞殿 - 成宗願刹							
			崇敎寺眞殿 - 穆宗願刹, 1000년(목종 3)							
			玄化寺眞殿 - 1018년(현종9) 낙성							
			重光寺眞殿 - 현종~목종 년간 낙성							
			興王寺眞殿 - 1067년(문종 21) 낙성							
			大雲寺眞殿 - 문종 년간 낙성							
			弘護寺眞殿 - 1093년(선종 10) 낙성							
			國淸寺眞殿 - 1097년(숙종 2) 낙성							
弘圓寺眞殿 - 1101년(숙종 6) 낙성										
天壽寺眞殿 - 1116년(예종 11) 낙성										
제요직 (丙科權務)	7科 (8石 10斗)	9科 (8石 10斗)	(개경 인근) 板積窯·德水窯·月盖窯·赤項窯·浪江窯·南山窯	-	-	-	-	-	-	
제목감직 (丙科權務)	7科 (8石 10斗)	9科 (8石 10斗)	龍驤(黃州)	典牧司	判事	省宰 (2품이상)	4科	80 結	35 結	300 石
			隴西(洞州)							
			銀川(白州)		使 2인	樞密·六尙書 (정3품)				
			羊欄(開城)							
			左牧(貞州)		副使 2인	(정4품이상)				
			懷仁(淸州)							
			常慈院(見州)		判官 2인	參上 (6품이상)				
			葉戶峴(廣州)							
			江陰(開城)		錄事 4인	乙科權務	6科	-	-	10石 10斗
東州(交州)										

- * 해당관서와 백관은 『高麗史』 「百官志」 중 문종연간 내용을 참조하였다.
- * 諸陵 설치내용은 『高麗史』 「兵志」 圍宿軍條에 나온 59基의 능 중에 문종조까지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는 능만 나열했으며, 피장자가 밝혀지지 않은 능은 제외하였다.
- * 諸眞殿은 『高麗史』 「兵志」 圍宿軍條에 나온 12개의 진전을 나열했으며, 설치년도는 사찰 낙성년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 * 諸窯는 개성 및 만월대 출토 명문기와와 『高麗史』에서 확인되는 窯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 * 諸牧監은 『고려사』 「병지」 馬政條를 참조했다.

<표1>에서와 같이 제릉직의 경우 상위관서인 제릉서가 존재하였다. 제릉서에는 종5품의 승 1명과丞 2명이 있으며 각 룡에는 권무관인 제릉직이 파견됐다. 제릉서 령과 승이 전시과에 의한 전지와 시지를 지급받고, 녹봉이 각각 60석과 22석 5두로 제릉직 8석 10두와 큰 차이가 있다. 이로 미루어 제릉직이 하위관임을 알 수 있으며 제릉서의 관리를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목감직도 상위관서로 전목사를 상정할 수 있는데, 전목사의 을과권무직으로 하위에 속한 緣事보다도 제목감직의 녹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제진전직이나 제요직은 상위관서를 유추하기 어렵지만, 제릉직이나 제목감직과 비슷한 유형의 관리체계 하에서 설치·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즉, 諸窯直이 관청이나 하나의 관직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窯의 直을 아울러 일컬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六窯直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 인종조의 권무관록에는 제요직 대신 六窯直이 나오는데 제요가 여러 개의 가마를 의미했으므로 六窯는 6개의 가마를, 六窯直은 여섯 개의 요에 6直이 존재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번째로는 제요를 모든 종류의窯業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瓦窯로만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공익(1736~1806)이 編著한 『練藜室記述』 중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 ④ 瓦署 : 신라에서 瓦器與陶登局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諸窯直이라 하였다. 태조는 東西窯直을 설치하였다가 후에 瓦署로 고치고 기와·벽돌 만드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⁴⁵⁾

④의 자료가 비록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국가 주관의 瓦窯業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즉 조선의 瓦署는 신라시기에 瓦器典(=陶燈局), 고려시기에 諸窯直으로 존재했었고, 이것이 조선 초기에 東西瓦窯로 정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諸窯라고 불리었던 여러 개의 기와 가마가 설치되었으며 기와수급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5) 『練藜室記述』 별집7, 官職典故, 諸司. “瓦署瓦器與陶登局 高麗諸窯直 太祖置東西窯直 後改爲瓦署 掌造瓦磚”; 증보문헌비고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增補文獻備考』 권223, 職官考10, 諸司 2, 瓦署. “高麗置諸窯直 以丙科權務差”).

이것은 다시 “諸窯는 기와를 궁궐 영조하는 데 공급하라”는 『高麗史』 「列傳」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⁴⁶⁾ 거리상의 이유로 원활한 기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던 궁궐 조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결국 제요가 고려 각지에 있는 모든窯業시설이라기 보다는 東西瓦窯처럼 도읍인 개경 인근의 기와 가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개경 인근에서 발굴되는 여러 명문기와의 분석으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1067년(문종 21) 홍왕사 창건 기록과 관련하여⁴⁸⁾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명문기와의 주목된다. 당시 ‘板積’, ‘赤項’, ‘月蓋’, ‘德水’ 등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는데,⁴⁹⁾ 이중 德水窯는 이미 문종조에 이루어졌던 홍왕사 창건에 직접 활용하였던 와요로 보인다.⁵⁰⁾ 그 위치 또한 홍왕사가 있는 덕적산에 설치되었다는 것 자체가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는 와요의 특성상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후 덕수요는 홍왕사를 비롯하여 개경 인근에 사찰이 창건되거나 중수될 때마다 필요한 기와를 공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기와 공급이 원활한 지역을 활용하는 방식을 중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굴된 명문기와 중의 月蓋窯와 板積窯는 『高麗史』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⁵¹⁾ 이는 곧 각窯의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板積窯와 月蓋窯는 瓦窯였으며, 이窯에서 생산된 기와가 궁궐의 각 소비처에 공급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관적요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46) 『高麗史』 권118, 列傳31, 諸臣 趙浚. “凡都監 有事則置 無事則罷 例也 … 願罷都監 屬繕工寺 并罷防禦火桶都監 屬之軍器寺 愼廉正者 官之 且使糾正監檢 以申宮闕之材瓦 被罪籍沒之居室 兩江之材 諸窯之瓦 供諸營造 凡所木陶瓦之役 且停三年 以休民力”

47) 국립문화재연구소,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48) 『高麗史節要』 권5, 문종 21년 正月. “興王寺成 凡二千八百間 十二年而功畢”

49)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12, 123쪽, 155-160쪽, 216-221쪽, 250쪽; 홍희유도 1973년 개성 만월대 궁터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월개(혹은 월포)’, ‘지포’, ‘적항’, ‘판적’, ‘남산’ 등의 기와 명문을 발견하여 생산지로 추정된 바 있으며, 이 중 월개·지포 등은 개경에 인접한 포구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홍희유, 앞의 책, 1989. 89-90쪽). 그런데 ‘남산’과 ‘지포’ 명문기와의 경우 실물이 제시되지 않아 근거의 타당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홍영의, 앞의 논문, 2012, 319쪽).

50) 홍왕사는 덕수현에 설치되었고(『高麗史』 권56, 地理1, 王京開城府. “德水縣 … 創興王寺于縣”), ‘왕성 남쪽 20리’에 있으며(이곡, 『興王寺重脩興教院落成會記』, 『東文選』 권70, “王城之南二十里有寺曰興王”) 德積山 근처라고 한다(權相老, 『韓國寺刹全書』 下,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1186쪽. “興王寺 古址在京畿道豊德<今入開城郡>德積山南在”).

51) 『高麗史』 권53, 五行1, 水, 睿宗 9년 4월 乙丑. “大雨雹 震文德殿東廊柱 及南山沮江月蓋窯等處樹木”; 『高麗史』 권18, 世家18, 의종 21년 4월. “亭在板積窯”

⑤ 戊寅에 하청절이므로 萬春亭에 행차하여 재추와 시신을 연흥전에서 향연하였다. … 亭子는 板積窯에 있으니 처음 窯亭을 因用하여 營造되었다. 안에 전각이 있어 延興이라 하고, 남쪽에 시내가 있어 좌우에 盤回하고 좌우에 松·竹·花草를 심었으며, 그 사이에 또 茅亭·草樓가 무릇 일곱이 있어 扁額을 가진 것이 넷이나 되니 靈德亭·壽御堂·鮮碧齋·玉竿亭이라 하고, 다리를 錦花橋라 하고, 門을 水德門이라 하였다. 그 御船은 錦繡로써 장식하고 假錦으로 돛을 만들어서 流連의 樂을 삼았다.⁵²⁾

⑤의 기사는 1167년(의종 21) 의종이 만춘정에 행차하였는데, 만춘정은 板積窯에 있었고, 만춘정 내에는 정전으로 보이는 연흥전과 7개의 茅亭·草樓, 그리고 호수인 남포 등을 지닌 대규모의 별궁이었음을 확인케 하는 내용이다.⁵³⁾ 본래는 판적요를 중심으로 하여 窯亭 등이 조성되었고, 연이어 각종 전각이 마련되었음을 알려준다. 후에 이곳이 별궁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와요의 설치와 운영이 우선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별궁을 포함한 궁궐 내 각종 전각의 영조 과정에 필요한 기와의 공급처로 이해할 수 있다. 판적요의 실무는 제요직 중 하나였던 판적요직이 담당했을 것이다.⁵⁴⁾

이는 도자기·숯 등이 所를 통해 공급됐던 것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지금까지 所수공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⁵⁵⁾ 이루어지면서 자기류 등의 특정 품목이 所수공업을 통해 주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별사수급 대상에 자기

52) 『高麗史』 권18, 世家18, 의종 21년 4월. “戊寅 以河清節 幸萬春亭 宴宰樞侍臣 於延興殿 … 亭在板積窯 初 因窯亭而營之 內有殿 曰延興 南有澗 盤回左右 植松竹花草 其間 又有茅亭草樓凡七 有額者四 曰靈德亭壽御堂鮮碧齋玉竿亭 橋曰錦花 門曰水德 其御船 飾以錦繡 假錦爲帆 以爲流連之樂 窮奢極麗 勞民費財 凡三年而成”

53) 金昌賢,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245쪽.

54) 앞의 주 41) 참조

55) 所수공업 생산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 된다. 권병탁, 「고려 후기 도자기소의 경영 형태」, 『전통도자의 생산과 수요』,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김현영, 「고려시기의 소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론』 1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구산우,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역사와세계』 12, 부산대사학회, 1988;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復刊; 서명희, 「고려시대 철소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69, 한국사연구회, 1990; 전병무, 「고려시대 은유통과 은소」,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1992; 위은숙, 「고려 후기 직물수공업의 구조변동과 그 성격」,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이정신, 「고려시대 종이의 생산실태와 지소」,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이정신, 「고려시대 어업 실태와 어량소」,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1998; 이정신, 「고려시대 차 생산과 차소」, 『한국중세사연구』 6, 한국중세사학회, 1999; 서성호, 「高麗 수공업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론』 41·4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9; 이정신, 「고려시대 동 의 사용현황과 동소」,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2006; 이정신, 「고려시대 금은채굴과 금소·은소」, 『역사와담론』 57, 호서사학회, 2010; 박종기,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소 생산체제」,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장이나 도기장이 없었던 이유를 중앙관청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으며 所를 통해 공급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⁶⁾ 또한 12~13세기 고려청자 등의 자기는 강진과 부안 등의 瓷器所를 중심으로 중앙에 공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⁵⁷⁾ 瓷器所는 고려전기부터 이미 과도한 별공 징수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

⑥ 睿宗 3년 2월에 判하기를, … 銅鐵·瓷器·紙墨 등 雜所의 別貢·物色을 징구함이 매우 지나치므로 匠人이 어렵고 고통스러워 도피하니, 所司에 명하여 그 각 所 별공·상공물의 많고 적음을 따라 정함으로써 奏裁하라.⁵⁸⁾

⑦ 司饗은 옛적의 尙食이요 지금의 司膳입니다 … 司饗에서는 매년 사람을 여러 도에 보내어 內用瓷器의 제조를 감독하여 1년에 한차례씩 하는데, 公을 빙자하고 私를 꾀하여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1도에서 실어가는 것이 소 8, 90마리에 이르므로 지나는 곳마다 시끄럽게 여깁니다. 京都에 이르러 진헌되는 것은 모두 100분의 1뿐이요, (나머지는) 모두 사사로이 하니 폐가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⁵⁹⁾

⑥의 기사는 1108년(예종 3)에 瓷器所에서 별공을 지나치게 징수하자 所에서 일하던 匠人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여 도피하고 있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만으로 보더라도 瓷器所를 통한 수취가 이미 고려전기부터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⑦에서는 고려 왕실에 필요한 도자를 관리하던 尙食局이 존재했으며, 상식국을 이어받은 사용은 매년 사람들을 각도에 파견하여 그 감독 하에 궁중에서 쓸 사기를 굽고 그 공급과정에도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⁰⁾ 조선초기에도 사용은 태종조까지 사기·목기 등의 器皿을 납부 받고 있었으며,⁶¹⁾ 이는 지방에서

56) 이혜옥, 앞의 논문, 1999, 23-25쪽.

57) 이병희, 「조선전기 도자기 수공업의 편제와 운영」, 『역사와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42-54쪽; 李喜寬·崔健,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的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 한국미술사학회, 2001.

58) 『高麗史』 권79, 食貨1, 貢賦. “睿宗三年二月 判 …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 徵求過極 匠人艱苦 而逃避 仰所司 以其各所別常貢物 多少酌定 奏裁”

59) 『高麗史』 권118, 列傳31, 諸臣 趙浚. “司饗 古之尙食 而今之司膳也 … 司饗 每歲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馱載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 弊莫甚焉”

60) 왕실 이외의 도자류는各司에 별도로 관리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한성옥, 「康津 靑瓷의 生産과 流通」, 『문화사학』 34, 한국문화사학회, 2010, 100쪽). 한편, 사용은 상식국(사선서)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였기에 병합이 요구되기도 하였다(김윤정,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 260, 2008, 51쪽).

바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공납용 자기였다.⁶²⁾ 또한 기명 공납은 지방관의 업무였는데, 廣州牧使에게 明에 보낼 백자를 진상하거나⁶³⁾ 忠淸道 監司에게 양녕대군의 처소에서 사용할 사기를 보내도록 하는 기사를⁶⁴⁾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솥도 貢賦에 포함되어 현령이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았는데⁶⁵⁾ 중앙의各司로 공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와는 공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⁶⁶⁾ 所 수취체제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 所수취체제에 대해서는 所가 중앙으로 직접 공납했다는 견해와 州현을 거치는 단계를 밟아 중앙에 납부되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중 후자의 견해, 즉 수공업所의 생산물이 州현에 부과된 공물이라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⁶⁷⁾ 만약 所의 공납을 직접 다스리는 중앙관청이 따로 있었다면 所에서 굳이 州현을 통해 공납하는 이중적인 시스템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중앙의 權務官이 직접 관리하는 諸窯는 해당 州현의 관리감독을 통해 중앙으로 납부되는 所의 수취체제와는 별개의 체계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도자류나 솥은 州현을 통해 尙食局 및各司에 공납되었다면, 諸窯는 그 자체로 생산시설이었고 각 窯를 관리하는 하급관료로서 窯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요지 근처에 설치하는 瓦窯의 특성을 감안하면 개경 인근에 기와·벽돌 등을 생산하는 窯의 존재는 공사의 특성으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고려전기 개경은 거란의 침입, 무신정변 등으로 인해 도성이 수차례 파괴되었다가 복구하기를 반복하였으며, 개경 내외에 많은 수의 사원이 창건되는 등 끊임없이 공사가 이루어졌다.⁶⁸⁾ 그때마다 막대한 양의 기와를 瓦所 등지에서 운송하였다고 이해하기에

61)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4월 丙子. “戶曹上器皿除弊事宜 啓曰 據長興庫呈 外貢砂木器 以司饗房納施行”
 62) 김영원, 「陶器所·磁器所 問題와 分院時期的 對日貿易」, 『미술사논단』 20, 한국미술연구소, 2005, 58-59쪽.
 63) 『世宗實錄』 권27, 세종 7년 2월 乙卯. “左副代言金赭問安于使臣 尹鳳曰 造紙方文及沙器進獻 有聖旨 …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 精細礮造以進”
 64) 『世宗實錄』 권19, 세종 5년 3월 辛丑. “傳旨于忠淸道監司 讓寧大君處常用沙器 擇善輸送”
 65) 『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壬子. “壬子 罷右司諫柳季聞 季聞請於文化縣令王孝乾 受其官貢炭陳省 重斂謀利 害及於民 憲府劾罷之”
 66) 이정신, 앞의 논문, 2007, 86쪽.
 67) 박종진, 「高麗時代 賦稅制度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3, 91쪽; 서성호, 「高麗 수공업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론』 41·4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9, 263쪽.
 68) 朴龍雲, 「개경 定都와 시설」, 『고려시대 開京 연구』, 일조각, 1996, 9-44쪽.

는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국가의 직접적인 토목공사에 필요했던 수공업분야이고 즉각적인 기와수급은 토목공사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2. 六窯의 역할과 이원적 기와생산체제

문종조에 諸窯直의 녹봉이 정해진 이후 인종조에는 제요직이 사라지고 새롭게 六窯直이 나타나는데, 두 直 모두 8석 10두의 녹봉을 지급받고 있던 공통점이 있다. 제요직이 여러 瓦窯를 담당하는 直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였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인종조에 새롭게 등장한 육요직이 제요직과 다른 종류의 요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문종연간에 각 瓦窯에 窯直을 두어 관리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와생산을 갑자기 중단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고려는 태조대부터 개경 안팎으로 끊임없이 사찰을 창건하여 많은 양의 기와가 필요했으며, 이들 사찰을 보수하는 데에도 기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다.

<표 2> 태조~문종 연간 개경 인근 조영활동 및 화재

연대	사건	비고
919년(태조 2)	법왕사·왕륜사 등 10개 사찰 창건	
921년(태조 4)	대흥사 창건	
922년(태조 5)	일월사 창건	
924년(태조 7)	외제석원·구요당·신중원 창건	
930년(태조 13)	안화선원 창건	
936년(태조 19)	광흥사·현성사·미륵사·내천왕사 창건	
940년(태조 23)	신흥사 중수	
951년(광종 2)	봉은사·불일사 창건	
954년(광종 5)	송선사 창건	
961년(광종 12)	궁궐 중수	수영궁궐도감 설치
963년(광종 14)	귀법사 창건	
968년(광종 19)	홍화사·유암사·삼귀사 창건	
989년(성종 8)	대묘(종묘) 조영	992년 완공
992년(성종 11)	학사 건립 및 국자감 창건	
999년(목종 2)	진관사 창건	
1000년(목종 3)	승교사 창건	
1007년(목종 10)	진관사 칠층탑 건립	
1009년(목종 12)	천추전 연소, 개경 나성 착공	1029년 나성 완공

1011년(현종 2)	개경 대묘·궁궐·민가 등 화재	거란 침입
1012년(현종 3)	중광사 창건	
1013년(현종 4)	공신당 수리	
1014년(현종 5)	궁궐 준공, 사직단 수리, 장작감 화재	
1018년(현종 9)	현화사 창건, 제위원 수리	
1020년(현종 11)	대궐 중수	1023년 완공
1022년(현종 13)	궁성 동북쪽 행랑 150여 칸 화재	
1027년(현종 18)	혜일중광사 창건	
1036년(정종 2)	대부시 화재	
1040년(정종 6)	승평문·어사대 및 송악신사 화재	
1051년(문종 5)	경시서 1백 20호 연소	
1056년(문종 10)	장원정 창건	
1060년(문종 14)	회경전 東廊과 南廊 연소	
1066년(문종 20)	운흥창 화재	

* 출처; 『高麗史』, 『世家』, 『五行志』, 『高麗史節要』

<표2>에서와 같이 태조대부터 현종대까지 『高麗史』에 기록된 개경 인근 창건 사찰 수만 해도 33개에 달한다.⁶⁹⁾ 그 기능이 왕이나 왕후, 또는 공신의 원찰이었으므로 규모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011년(현종 2)에는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개경이 불타자 궁궐을 복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공사는 1014년(현종 5)이 되어서야 끝난 큰 규모의 공사였다. 이후에도 대궐을 중수하거나 개경 내에 큰 화재가 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으며, 소실된 건물을 복구하는 데에 막대한 양의 기와가 필요하였음은 당연하다. 또한 현종대에 완성한 개경 나성도 지속적으로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1076년(문종 30) 궁궐도감이 설치된 것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궁궐수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⁷⁰⁾ 이와 함께 1051년(문종 5), 1060년(문종 14), 1066년(문종 20)에 각각 큰 화재가 있었으며 1067년(문종 21)에는 12년이나 걸린 흥왕사 창건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와 함께 諸窯直이 제정되었다. 지속적인 기와의 공급이 중요해지자 고려 정부는 기와의 생산을 따로 전담시킬 관직의 필요성을 자각했던 것이다.

이는 문종조 이전에 이미 제요직과 유사한 직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東西瓦窯를 설치했던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1392년(태조 1) 7월에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朝鮮王朝實錄』에는 東窯直·西窯

69) 이외에도 태조대에는 龜山寺, 興國寺, 廣明寺, 開國寺, 崇福寺, 聖燈庵, 太安寺 등이 개경 인근에 창건되었다(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27쪽).

70) 김창현, 위의 책, 2002, 33쪽.

直이 각각 1명씩 기록되었다.⁷¹⁾ 조선 초의 수취구조는 일정 정도 고려후기의 제도를 답습하였던 부분이 있으며,⁷²⁾ 수공업관청의 경우에도 중복되는 관청을 통폐합하거나 명칭을 개정하는 등의 개편 정도로 정리되고 있다.⁷³⁾ 이러한 이유로東西瓦窯는 고려의 六窯가 모태였으며, 동서와요의 관직 이름도 六窯直에서 東窯直·西窯直 등으로 개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왕조도 도성건설과 유지를 위해 瓦窯業을 국가에서 직접 관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전 왕조인 고려의 제도에서 직접 원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元史』에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요업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⁷⁴⁾ 이는 도성 내 궁궐과 관청·사찰 등의 조영과 유지를 위해 관영와요의 운영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고려의 생산체제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다.

기와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하고 파손의 위험 등으로 운송이 어려워 瓦窯는 수요지 근방에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⁷⁵⁾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설 운영된 와요는 완성된 기와를 수송하기보다는 기와생산에 필요한 흙이나 뿔나무를 강을 이용하여 옮겨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⁷⁶⁾ 개경 인근에 설치된 六窯가 기와 생산의 직접적인 재료인 흙과 뿔감을 비롯하여 풍부한 수량을 전제로 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국초부터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중앙 정부의 막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 시설이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의 와요 운영 방식은 조선 전기의 도성 건설에서도 적극 원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초의 시급한 해결과제였던 도성 건설과 제도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 瓦署가 설치되었던 용산도⁷⁷⁾ 목재와 뿔나무 등의 운송에 있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좋은 위치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⁸⁾

71)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정미. “定文武百官之制 … 東西窯直 各一.”

72) 이혜옥, 「고려 후기 수취체제의 변화」,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202쪽.

73) 이혜옥, 앞의 논문, 1999, 15쪽.

74) 『元史』 권90, 百官6. “大都四窯場 秩從六品 提領 大使 副使各一員 領匠夫三百餘戶 營造素白琉璃磚瓦 隸少府監 至元十三年置 其屬三 南窯場 大使 副使各一員 中統四年置 西窯場 大使 副使各一員 至元四年置 琉璃局 大使 副使各一員 中統四年置”

75) 鄭治泳, 앞의 논문, 2006, 36-37쪽; 최문환, 앞의 논문, 2010, 45-52쪽. 최문환에 의하면 조선전기 와요와 수요지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이 1km 미만으로 나타난다. 그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는 교통사정이 더욱 열악하였을 것이므로,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수요지 근처에 와요가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6) 최문환, 앞의 논문, 2010, 55쪽; 이정신, 앞의 논문, 2007, 92-93쪽.

77) 최문환, 위의 논문, 2010, 31-32쪽.

특히 『고려사』에 기록된 문종조의 제요직과 인종조의 육요직의 기록 사이에 개경에서는 사찰이나 국가 토목공사의 빈번한 시행과 함께 화재도 자주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67년(문종 21)부터 1145년(인종 23)까지의 개경에는 佛事나 재난 복구 등을 위한 기와 수급이 요구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문종~인종 연간 개경 인근 화재 및 불사

연대	사건	원인
1067년(문종 21)	홍왕사 낙성	佛事
1080년(문종 34)	장작감 화재	火災
1086년(선종 3)	시전 화재	火災
1089년(선종 6)	국청사 창건	佛事
1090년(선종 7)	신흥창 화재	火災
1093년(선종 10)	홍호사 창건	佛事
1100년(숙종 5)	남루교동랑·사점관·장생사 및 민가 수백호 延燒	火災
1101년(숙종 6)	홍원사 낙성, 이부 및 태복시 창고 화재	火災
1105년(숙종 10)	대녕궁 화재	火災
1106년(예종 1)	대녕궁 화재, 천수사 창건	火災, 佛事
1110년(예종 5)	상약국·남행랑·어사대 창고 燒失	火災
1112년(예종 7)	경시루 북쪽 행랑 65칸 화재	火災
1113년(예종 8)	경천사 낙성, 도관 남쪽 행랑 및 장작감 화재	火災
1114년(예종 9)	중상서 화재	火災
1116년(예종 11)	송상객관 화재	火災
1118년(예종 13)	안화사 낙성, 명릉 화재	佛事, 火災
1119년(예종 14)	영은관·건명전 화재	火災
1121년(예종 16)	시전 화재	火災
1126년(인종 4)	동화문 행랑·궁궐 전각·창고 등 소실	이자겸 정변
1128년(인종 6)	연덕궁 화재	火災
1138년(인종 16)	본궁 화재	火災
1143년(인종 21)	연덕궁 화재	火災
1144년(인종 22)	시전 화재	火災
1145년(인종 23)	인은관 화재	火災

* 출처; 『高麗史』, 『世家』, 『五行志』, 『高麗史節要』

<표 3>에서와 같이 개경에서는 대규모의 佛事와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이의 복구를 위한 대규모의 기와 생산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기와 조달을 위해 도성 가까운 곳에 와요를 설치하고 그것의 운영을

78) 조선초기 용산에는 관곽소(귀후서)도 있었는데(한희숙, 「조선전기 장례문화와 歸厚署」, 『조선시대사학보』 31, 조선시대사학회, 2004, 48쪽), 한강을 이용해 목재를 운송해오기 좋은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기와생산을 담당했던 諸窯는 여전히 존재했으며, 諸窯直만이 六窯直으로 새롭게 개편·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六窯直의 등장은 인종조의 권무관 개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權務官祿은 1076년(문종 30)에 1科(60石)에서 10科(6石)의 10과등으로 정해졌는데, 이때 잡권무였던 7과(8石 10斗)·8과(8石)·9과(7石)가 인종조에 9科(8石 10斗)로 통합되었다.⁷⁹⁾ 문종때 7科에 해당했던 諸窯直이 인종조의 개편에서 9科로 통합되면서 六窯直으로 정리되었던 것이다(앞의 <표 1>참조).

즉, 개경 인근 6개소의 와요를 대상으로 개경에 필요한 기와수급을 전담하게 하였던 것이며, 개경의 빈번한 공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명문기와로 확인된 관적·월개·덕수·적항요와, 『高麗史』에 보이는 패강·남산요를⁸⁰⁾ 더하면 총 6개의 관영 기와 가마가 상정된다.⁸¹⁾ 물론 발굴이 더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관영와요가 등장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개경의 營造를 위한 기와 가마의 관리와 운영은 앞에서 언급한 육요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듯 중앙에서는 六窯를 설치하는 등 직접적인 瓦窯 운영을 통해 기와의 수급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瓦所 관련 기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려시대 瓦所의 존재는 다음의 사료에서 나타난다.

⑧ 고려 때에 또 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金所·銀所·銅所·鐵所·絲所·紬所·紙所·瓦所·炭所·鹽所·墨所·藿所·瓷器所·魚梁所·薑所의 구별이 있어 각각 그 물건을 공급하였다.⁸²⁾

⑨ 栗谷瓦所의 성이 1이니, 廉이다.⁸³⁾

사료 ⑧에서는 와소가 언급되고 있으며, ⑨에서는 명칭으로나마 와소의 흔적

79) 崔貞煥, 「權務官의 概念에 대한 再檢討」, 『한국중세사연구』 11, 한국중세사학회, 2001, 90쪽-95쪽.

80) 『高麗史』 권53, 五行1, 水, 睿宗 9년 4월 乙丑. “大雨雹 震文德殿東廊柱 及南山沮江月蓋窯等處 樹木”

81) 관적·월개·적항·덕수요와 남산, 패강요는 육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설은 추가 발굴에서 다른 요장의 명문이 확인되면 성립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홍영의, 앞의 논문, 2012, 323쪽).

8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경기 여주목 고적. “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 銀所 銅所 鐵所 絲所 紬所 紙所 瓦所 炭所 鹽所 墨所 藿所 瓷器所 魚梁所 薑所之別 而各供其物”

83) 『世宗實錄』地理志, 충청도 청주목 영동현. “栗谷瓦所 姓一廉”

을 찾아볼 수 있다.⁸⁴⁾ 두 기사는 각각 경기도와 충청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중앙이 아닌 지방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드러나는 사료만으로 유추해보면 고려시대 도움이었던 개경은 六窯를 통해 기와의 수요를 충당했으며, 지방에서는 瓦所를 운영하여 기와를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생산체제가 운용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고려시대 와소로 추정되는 곳은 경상도 하양현 瓦村, 경상도 양산군 와곡부곡, 전라도 광산현 瓦谷, 충청도 영동현 栗谷瓦所, 충청도 공주목 대전 구완동요지 등이 있는데⁸⁵⁾ 모두 지방이다. 기와가 많이 필요한 개경 근처에는 와요지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나 사찰이 생산을 주관했으리라 생각되며,⁸⁶⁾ 瓦所로 추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와소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경의 六窯처럼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상설적인 운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방의 경우 개경처럼 막대한 기와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와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 임시로 瓦窯를 설치하는 예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와요의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었다. 강진 현산리 가마터도 이러한 예로 보이며,⁸⁷⁾ 이외에도 건물지 근처에서 발견되는 기와가마는 대체적으로 해당 건물의 영조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이해된다.⁸⁸⁾ 그렇기 때문에 고려정부가 기와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瓦所에서 필요처로 바로 공급한다거나 와장을 직접 파견하여 현지에서 기와생산이 이루어졌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 와요지는 많이 나타나지만 瓦所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⁸⁹⁾

그런데 이러한 설명들은 와요가 수요지 근처에 설치된다는 전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으므로, 중앙의 六窯와 지방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육요가 개경의 기와수급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거리상의 이유로

84) 이정신은 이러한 조선전기의 기록과 발굴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와소의 존재를 추적한 바 있다 (이정신, 앞의 논문, 2007).

85) 이정신, 앞의 논문, 2007, 83쪽.

86) 이정신, 위의 논문, 2007, 84쪽.

87) 이정신, 위의 논문, 2007, 80쪽.

88) 鄭治泳, 앞의 논문, 2006, 36-37쪽; 최문환, 앞의 논문, 2010, 31-40쪽.

89) 이정신, 위의 논문, 2007, 86쪽.

지방에 기와를 운송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와요지는 많이 나타나는데 반해 와소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기와의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은 와요를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瓦所가 존재했다면 해당 지역은 꽤 큰 규모의 도시였음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기와의 수요가 많았다면 따로 所를 운영함으로써 수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瓦所가 존재했던 지역은 기와를 사용했던 관아나 사찰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중앙인 개경에서는 막대한 기와수요로 인해 常設瓦窯인 六窯가 설치되었으며, 건물조영이나 재해로 인한 수리·복구를 위해 운용되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기와의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와장을 파견하는 등 임시로 와요를 설치해 기와를 공급했으며, 기와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瓦所를 설치해 기와의 수급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기와생산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체제로서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고려시대 六窯의 운영과 解弛

1. 六窯의 운영과 瓦匠의 位相

瓦窯 운영에 있어 기와 재료인 흙과 땔나무의 마련에는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瓦匠 몇 명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정부는 전시과 체제 내에서 관청 등에 柴地를 지급하여 필요한 목재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⁹⁰⁾ 고려시대의 와요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료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지만 몇몇 기록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⁹¹⁾ 조선 초기 별와요 설치기사는 와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여서 주목된다.

⑩ 여러 道에서 僧·匠을 차등 있게 징발해서 그 役에 나아가도록 하였는데, 충청도·강원도에서 각각 僧 50명과 瓦匠 6명이요, 경상도에서 僧 80명과 瓦匠 10명이요, 경기도·풍해도에서 각각 僧 30명과 瓦匠 5명이요, 전라도에서 僧 30명과 瓦匠 8명이었다.⁹²⁾

사료 ⑩은 1406년(태종 6) 조선에서 처음 별와요를 설치할 때의 내용으로, 와장과 승의 비율을 각 도별로 계산해보면 충청도·강원도의 경우 와장 1명당 승 8.3명, 경상도는 와장 1명당 승 8명, 경기도·풍해도는 와장 1명당 승 6명, 전라도는 와장 1명당 승 3.75명이 나온다.⁹³⁾ 이렇게 각 도별로 인력 비율을 상이하게

90) 姜晉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 一潮閣, 1991, 改訂初版, 196-201쪽.

91) 이정신, 앞의 논문, 2007. 78-79쪽에서 日本 東大寺의 사례를 들어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762년(天平寶字 6) 사찰을 지을 때 기와제작에 동원된 인원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2월에는 기와 1만 5,880매를 굽는데 와장 225명과 잡역부 511명이 소요됐으며 이중 땔나무채취에만 459명이 동원되었다. 또 3월에는 기와 1만 1,485매를 굽는데 와장 230명과 잡역부 528명이 소요됐고, 이중 흙 반죽에 351명이 동원되었다.

92)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1월 기미조. “發諸道僧匠有差 使赴其役 忠淸 江原道各僧五十名 瓦匠六名 慶尙道僧八十名 瓦匠十名 京畿 豐海道各僧三十名 瓦匠五名 全羅道僧三十名 瓦匠八名.”

93) 이 사료의 해석은 연구자마다 조금 차이를 보인다. 홍희유는 승 240명, 와장 29명으로 계산하였고(홍희유, 앞의 책, 1989. 189쪽), 전영준은 승 190명, 와장 29명으로 계산하였다(전영준,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동국대, 2004, 130쪽). 또 황의수와 정치영은 승 270명, 와장 40명으로 계산했다(황의수, 앞의 책, 1990, 21-22쪽; 鄭治泳, 앞의 논문, 2006, 34쪽). 그러나 홍희유가 계산한 승 240명은 ‘승’을 하나 빼서 해석했고, 전영준이 계산한 승 190명은 ‘승’을 모두 빼서 해석한

징발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하나의 별요에서 役을 수행하였다면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다만 이때 징발한 인력의 총합은 1426년(세종 8)에 설치한 별요에서 瓦匠 40명, 助役人 300명을 징발한 것에 근접한 수치이며⁹⁴⁾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瓦署의 瓦匠 정원도 40명이라는 점이⁹⁵⁾ 주목된다. 즉 당시에 하나의 瓦窯는 와장 40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으며, 기와를 굽기 위해서는 와장 1명 당 6.75~7.5명의 助役人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1412년~1414년간(태종 12~태종 14)에 행랑조성도감에서 동서별요를 두어⁹⁶⁾ 승군 600명과 경기·풍해도의 船軍 1천명을 징발하였는데⁹⁷⁾ 동서별요에 각각 300명의 승군이 동원됐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선군은 땔나무 조달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26년(세종 8) 기사에도 선군을 동원해 땔나무를 벌채하고 수송 하는 기록이 있는데,⁹⁸⁾ 땔나무 운송은窯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료임과 동시에 막대한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력을 따로 운용해야만 했다. 즉 와요는 땔나무 운송 인력과 와장·조역인 등 기와를 굽는 인력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瓦窯 운영에는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고려시대의 六窯에도 소속된 瓦匠과 助役人의 수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六窯에서 생산한 기와는 대부분 궁궐·관아·사찰 등에 공급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의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① 왕성이 비록 크지만 메마르고 자갈땅이며 산과 언덕이므로 땅이 평탄하거나 넓지 않아, 예로부터 그 백성들이 거주하기에 형세가 높고 낮아 벌집과 개미구멍 같다. 띠를 베어 덮고 겨우 風雨를 막는데, 그 크기가 兩椽에 불과하다. 부유한 집은 다만 기와집을 두었으나, 겨우 열에 한두 집뿐이다.⁹⁹⁾

수치이다. 와장 인원은 ‘各’을 포함해서 계산할 경우 40명이 되고 빼서 해석하면 29명이 된다. 그러나 이후 설치되는 와요에서 와장 40명, 조역인 300명의 인원이 책정되는 것을 보았을 때, 와장 40명과 승 270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94)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기사. “戶曹啓 … 一 瓦匠四十名 僧人爲先抄定 一 助役人三百名 自願人及外方僧人 刷出給衣糧 僧人則考其赴役日數及勤慢賞職.”

95) 『經國大典』 권6, 工典 工匠條.

96)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6월 무신. “放東西別窯 及行廊赴役僧徒”

97) 『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7월 임진. “信又請復置別窯 以備蓋瓦 上皆許之 命朴子青督其役 發兩界各道僧軍六百名 京畿豐海道船軍一千名 以赴其役.”

98)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기사. “燔瓦木 量宜定數 每年令京畿 江原 黃海道 當領船軍於漢江上流斫伐 用水站船輸納”

99)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 城邑 民居. “王城雖大 磽确山壟 地不平曠 故其民居 形勢高下 如蜂房

사료 ⑪은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록된 내용으로, 개경에서 기와를 덮은 집은 열에 한 두 집뿐이라고 하였다. 『宋史』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¹⁰⁰⁾ 이 기록이 다소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기와집보다는 초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기와를 올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기와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상황으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는데, 민가가 대부분 초가집으로 화재가 나면 여러 채의 집이 동시에 불타는 일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도성은 집과 담장이 서로 붙어 있었으며 대부분이 초가집이라 화재가 나면 한 번에 백여 호의 집이 불타버렸다.¹⁰¹⁾ 특히 『朝鮮王朝實錄』에는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화재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으며,¹⁰²⁾ 도성의 대규모 화재 발생을 염려하였던 태종은 1406년 別瓦窯를 설치하여 기와의 보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¹⁰³⁾

고려시대에도 사정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고려는 조선처럼 別瓦窯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민간 기와보급정책을 폈던 기록도 없다. 즉 六窯는 官需官給의 성격을 가진 官營瓦窯였으므로 개경 인근의 궁궐·관청·사찰 등에 기와를 보급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六窯에서 생산된 기와는 국가가 관장하는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都監이 설치되면 助役의 하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 같다.

⑫ 무릇 都監은 일이 있으면 곧 두고, 일이 없으면 곧 파하는 것이 예입니다 ... 원컨대 도감을 파하여 선공시에 붙이고, 아울러 방어화통도감을 파하여 군기시에 붙이고, 삼가 청렴하고 바른 자에게 벼슬을 주소서. 또 糾正으로 하여금 壺

蟻穴 誅茅爲蓋 僅庇風雨 其大 不過兩椽 比富家 稍置瓦屋 然十纔一二耳”

100) 『宋史』 권487, 外國列傳246, 高麗. “民居皆茅茨 大止兩椽 覆以瓦者才十二”

101) 『世宗實錄』 권45, 세종 11년 9월 계유. “惟我都城 地窄人稠 接屋連牆 草蓋之家 十居七八 一遇火災 連燒百餘戶.”

102)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계사; 『世宗實錄』 권45, 세종 11년 9월 계유; 『世宗實錄』 권52, 세종 13년 4월 갑진; 『世宗實錄』 권121, 세종 30년 9월 을사; 『端宗實錄』 권10, 단종 2년(1454) 3월 신유.

103) 『太祖實錄』 권11, 태종 6년 1월 기미. “始置別瓦窯 以參知議政府事李膺爲提調 前典書李士穎 金光寶爲副提調 僧海宣爲化主 海宣嘗言於國曰 新都大小人家 皆蓋以茨 於上國使臣往來 瞻視不美 且火災可畏 若置別窯 使予掌以燔瓦 許人人納價買之 則不滿十年 城中閭閻 盡爲瓦屋矣 國家然之.”

串 궁궐의 재목과 기와, 죄를 입고 몰수한 집과 양강의 재목과 諸窯의 기와를 여러 營造에 주는 일을 살펴 검사케 하소서. 무릇 나무와 기와 굽는 일 또한 3년을 정지하여 민력을 쉬게 하소서.¹⁰⁴⁾

사료 ⑫에서 표현하는 都監은 공사가 있을 때 설치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파하는 임시적 성격을 가진 관청이었으므로 六窯直이 權務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으로는 여러 窯의 기와를 여러 토목공사에 제공토록 했다는 점에서 궁실이나 관사의 영조를 도맡아 했던 繕工寺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도감이 임시기구라고는 하지만 수세기동안 존속하며 기능하였던 점에서 정규관부와의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¹⁰⁵⁾ 즉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된 도감은 정규관부인 선공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六窯는 정부 조직 구조상 선공시의 관리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舊唐書』에도 건축의 조영을 담당하며 와기류를 제작했던 甄官署가 장작감에 소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⁶⁾ 『宋史』에도 戶部の 일을 분장시키면서 造案을 다스리는 곳에 陶瓦 등 여덟 가지 일을 담당시켰는데, 이는 건축 담당 부서에서 기와를 직접 생산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⁰⁷⁾

이러한 사례에서 六窯도 도감과 마찬가지로 고려후기까지 꾸준히 운영되며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특히 1278년(충렬왕 4)에는 원의 침략 등 전란과 다양한 모순들로 인해 국가시설이 무너지고 所수공업이 해체되어 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六窯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기와수급문제가 국가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선공시가 六窯의 상위기관으로서 존재했으며, 六窯直은 선공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도감이 설치되었을 때에 기와·벽돌 등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관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六窯가 權務官을 통한 직접지배를 받는 등 官營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瓦匠이 別賜를 받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1076

104) 『高麗史』 권118, 열전31, 諸臣 趙浚. “凡都監 有事則置 無事則罷 例也 … 願罷都監 屬繕工寺 并罷防禦火桶都監 屬之軍器寺 慎廉正者 官之 且使糾正 監檢以串宮闕之材瓦 被罪籍沒之居室 兩江之材 諸窯之瓦 供諸營造 凡所木陶瓦之役 且停三年 以休民力”

105) 문형만, 「고려특수관부연구-제사도감각색의 분석」, 『역사와경계』 9, 부산경남사학회, 1985, 2쪽.

106) 『舊唐書』 권44, 직관3. “甄官令 掌供琢石陶土之事”; 『新唐書』 권48, 백관3. “將作監 … 掌土木工匠之政 … 甄官等署”

107) 『宋史』 권162, 직관2. “戶部分掌五案 … 三曰修 造案 <掌京城工作及陶瓦八作>”

년(문종 30)에 제정된 ‘諸衙門工匠別賜’에 와장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六窯에서 부역하던 와장은 別賜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

고려시대 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¹⁰⁸⁾ 사료의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명확히 밝힐 수가 없다. 그러나 몇 가지의 간접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瓦匠이 별사를 받았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工匠은 국초부터 百工案牘¹⁰⁹⁾이나 工匠案¹¹⁰⁾을 통해 관리되어 왔는데, 이들은 고려 정부의 각종 공사에 동원되었다.

⑬ 乙亥朔에 契丹主가 京城에 들어와 大묘·궁궐·민가를 모두 다하여 불태웠다.¹¹¹⁾

⑬의 사료에 의하면 1010년(현종 1) 시작된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개경 궁궐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도성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궁궐이 복원된 것은 1014년(현종 5)으로¹¹²⁾ 거란이 물러간 1011년(현종 2)으로부터 4년이나 걸린 공사였다. 당시 정부는 상당수의 공장을 징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029년(현종 20) 완공된 개경의 나성을 쌓는 과정에서도 丁夫 23만 8,938명과 工匠 8,450명을 동원했던 기록이 있다.¹¹³⁾ 도성복원에도 이에 준하는 인력을 징발

108) 고려시대 공장의 신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 된다. 백남운,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改造社, 1937(『백남운 전집2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이론과실천사, 1993); 홍승기, 「高麗時代の 工匠」, 『震檀學報』 40, 震檀學會, 1975; 강만길, 「수공업」,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75;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1989, 復刊; 임영정, 「고려시대의 사역, 공장층에 대하여」,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1992; 서성호, 「고려전기 지배체제와 공장」, 『한국사론』 27, 국사편찬위원회, 1992; 서성호,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7; 송성안, 「고려후기의 사원수공업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1999; 이정희, 『고려시대 세계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김난옥, 『고려시대 천사·천역양인 연구』, 신서원, 2000; 오일순, 「高麗時代 役制의 變動과 雜色役」,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9; 전영준, 「고려시대 공역승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4.

109)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출판부, 2003, 崔士威墓誌銘. “庚戌年兵難 仍以百工案牘 皆以燒亡 返正後 公獨奏請 與主典 五年之間 中外工匠 姓名成績 各司分附也”

110) 『高麗史』 권75, 選舉3, 銓注 限職. “凡限職 靖宗六年四月 判 南班及流外人吏將校等子 不付工匠 案者 依父祖有痕咎人例 入仕”

111) 『高麗史』 권4, 세가4, 현종 2년 1월. “乙亥朔 契丹主 入京城 焚燒 大廟宮闕民屋皆盡”

112) 『高麗史』 권4, 세가4, 현종 5년 1월. “甲午 宮闕成”

113) 『高麗史節要』 권3, 현종 20년 8월. “命參知政事李可道 左僕射異膺甫 御史大夫皇甫俞義 尙書左丞黃周亮 徵丁夫二十三萬八千九百三十八人 工匠八千四百五十人 築開京羅城”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도감설치 기사가 보이지 않지만 광종대의 기사로 미루어 보아 도감이 설치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961년(광종 12) 궁궐을 수리했다는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도감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¹¹⁴⁾ 『高麗史』 「百官志」에서는 같은 해에 修營宮闕都監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¹¹⁵⁾ 현종 대에도 전례에 의거하여 전소된 궁궐을 새로 짓는 큰 공사를 전담할 都監을 설치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宮闕都監은 공장을 징발하여 1029년 개경 나성을 쌓을 때처럼 막대한 수의 노동력을 투입했을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궁궐공사에는 막대한 기와가 필요했을 것이며, 궁궐도감은 六窯를 활용하여 기와를 생산·공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官營瓦窯인 六窯의 장인들도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을 것이나 이들이 공장안에 기재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六窯를 담당하던 權務官이 존재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되어 관리되었을 것이다.

⑭ 고려는 장인의 기술이 더없이 정교하여, 그 뛰어난 재주로 모두 公家에 귀속되었다. 幞頭所·將作監이 곧 그곳이다.¹¹⁶⁾

⑮ (文宗) 27년 正月에 有司가 아뢰기를, “令典을 살피건대 工·商家는 기술을 가지고 임금을 섬겨 그 업에 전념하며 선비와 나란히 入仕를 얻을 수 없습니다.”¹¹⁷⁾

⑯ 恭讓王 3년 3월 中郎將 房士良이 上書하였다. “... 가만히 보건데 本朝의 농부는 履畝하여 세를 걷고 工匠은 公室에서 일하도록 하는데, 商人은 이미 力役이 없고 또 稅錢이 없습니다.”¹¹⁸⁾

⑭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의하면 고려의 장인들 중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들은 국가에서 선발하여 관부에 귀속시켰음을 알 수 있는데, 幞頭所·將作監 등을

114) 『高麗史』 권2, 世家2, 광종 12년. “修宮闕 移御正匡王育第”

115) 『高麗史』 권77, 百官2, 諸司都監各色. “宮闕都監 < ... 光宗十二年 置修營宮闕都監 ... >”

116)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9, 民庶 工技. “高麗 工技至巧 其絕藝 悉歸于公 如幞頭所 將作監 乃其所也”

117) 『高麗史』 권75, 選舉3, 銓注 限職. “(文宗) 二十七年正月 有司奏 按令典 工商家 執技事上 專其業 不得入仕與士齒”

118) 『高麗史』 권79, 食貨2, 貨幣 市估. “恭讓王 三年三月 中郎將房士良 上書曰 ... 竊觀 本朝 農則履畝而稅 工則勞於公室 商則既無力役 又無稅錢”

예로 들고 있다. 복두소는 『高麗史』 「百官志」 諸司都監各色에 실린 ‘幪頭店’을 말하는 것이며 장작감은 선공시의 다른 이름이다.

사료 ⑮의 1073년(문종 27) 정월 기사는 工商의 입사를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공장은 기술을 가지고 주상을 섬겨 그 직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료 ⑯의 1391년(공양왕 3) 3월 기사에도 공장은 公室에서 노역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두 기사에서 고려시대의 공장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장이 농사 등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職役에 전념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던 것 같다.¹¹⁹⁾

⑰ 雜織·胥史·工匠 등 무릇 職役이 있는 자는 또한 모두 常俸이 있어 耕作을 대신하니 別賜라고 하였다.¹²⁰⁾

사료 ⑰의 기사에서 공장에 대한 인식은 더욱 명확해진다. 공장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직역을 지니게 되는데, 국가에서는 공장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別賜를 규정하여 지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려 정부의 공장 인식은 선공시나 복두점에서 노역하는 장인들에게도 농사를 짓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끔 별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⑱ (顯宗 3년) 3월 … 요사이 人習이 가볍고 사치스러워 본업을 버리고 末業을 좇아 稼穡을 모른다. 그 여러 道의 錦綺坊·雜織坊·甲坊의 匠手를 아울러 뽑아 덜어내어 농업을 좇도록 하라.¹²¹⁾

사료 ⑱은 1012년(현종 3)의 기사로 개경에서는 거란의 침입으로 불탄 궁궐복원에 전념하던 시기였다. 백성들이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末業을 좇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공장 중에서 사람을 뽑아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농민

119) 이해옥, 앞의 논문, 1999, 5쪽. 이에 따르면 공장층은 조세수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力役징발, 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품의 공납이 원칙이었다. 토지를 매개로 수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0) 『高麗史』 권78, 食貨1, 祿俸 서문. “雜織胥史工匠 凡有職役者 亦皆有常俸 以代其耕 謂之別賜”

121) 『高麗史』 권79, 食貨2, 農桑. “(顯宗三年) 三月 … 比者 人習浮靡 棄本逐末 不知稼穡 其諸道 錦綺雜織甲坊匠手 並令抽減以就農業”

들이 공장으로 전업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 기사에서는 두 가지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는 錦綺坊·雜織坊·甲坊 등에 속한 장인들이 지방관아에 속한 공장으로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官에 귀속되어 운신의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므로 別賜와 같은 役價를 받지 않고 생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가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농업에서 손을 뗄 수 있었을 것이다. 繕工寺에 속한 공장들도 마찬가지로였으며 六窯의 와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末業, 즉 상업을 좇는다고 언급하면서 공장들을 지적한다는 점으로서 공업과 상업의 연계를 찾아볼 수 있겠다. 궁궐복원이나 나성축조 등에 동원되었던 많은 수의 非官屬工匠들은 국가의 징발이 없을 때 농사를 짓거나 잉여생산물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때 농사보다는 본인이 가진 기술로서 장사를 하는 편이 보다 수월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①9 (예종) 8월 乙酉日 이후 잘못을 범한 바 있어 관리에게 論劾된 것과 더불어 贖銅徵瓦는 모두 감면하라.¹²²⁾

②0 (의종) 어가를 맞이할 때 잘못하여 有司에게 拘執된 자와 公徒私杖 이하 贖銅徵瓦者는 모두 放除하라.¹²³⁾

②1 (명종) 그 公徒私杖 이하와 贖銅徵瓦는 모두 면제하라.¹²⁴⁾

②2 (신종) 이 달 초하루 새벽 이전의 內外斬絞 이하로 贖銅徵瓦에 이르기까지 모두 풀어주고 면제하라.¹²⁵⁾

1120년(예종 15) ‘贖銅徵瓦’에 관한 표현이 『高麗史』에 처음 등장하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銅을 바치고 기와를 징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贖銅徵瓦는

122) 『高麗史』 권14, 世家14, 예종 15년 9월 戊申. “八月乙酉 以後 誤有所犯 爲所司論劾 及贖銅徵瓦 咸除之”

123) 『高麗史』 권18, 世家18, 의종 22년 4월 己亥. “迎駕時 有所違誤 爲有司所拘執者 公徒私杖以下 贖銅徵瓦 並皆放除”

124) 『高麗史』 권19, 世家19, 명종 3년 4월 乙丑. “其赦公徒私杖以下 及贖銅徵瓦 皆除之”

125) 『高麗史』 권21, 世家21, 신종 즉위년 11월 庚子. “自今月初一日昧爽前 內外斬絞以下 至於贖銅徵瓦 咸赦除之”

경범죄에 부과하는 형벌인데, 동과 기와는 일종의 범칙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銅의 경우 고려시기의 器皿이 대개 銅을 사용하였으며,¹²⁶⁾ 기와도 銅과 같은 財貨로써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私窯 금령이 해제되는 것은 1309년(충선왕 1)의 일이며,¹²⁷⁾ 贖銅徵瓦는 이미 12세기 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형벌이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도성 인근에서 기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六窯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瓦窯는 일정규모의 노동력이 준비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私窯를 금하고 있었던 고려전기에 私工匠들이 개인적으로 와요를 운영하여 잉여생산물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와요 운영에 필요한 많은 노동력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인 개경에서도 민가의 2할만이 기와를 덮었을 정도로 기와보급량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六窯 운영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으나 조선건국 초 궁궐조성을 위해 2개소의 와요를 설치한 후 생산물을 활용하고 또 민가에 기와보급을 위한 별와요 설치가 있었던 것에 비해, 고려는 6개소의 와요를 운영했으며 민가를 위한 와요를 따로 운영하지 않았던 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육요는 이미 고려 초부터 운영되었을 것이며, 범칙금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관부에 필요한 양 이외의 잉여생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 관영수공업 생산품 중 일부는 酒食店·藥店·鹽店·書籍店·幪頭店·綾羅店 등에서 제조·판매되기도 하였다는 점은¹²⁸⁾ 이러한 사례를 반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贖銅徵瓦가 경범죄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다른 형벌에 비해 빈도가 높았을 것이며, 六窯에서는 기와를 팔아 운영자금을 충당하거나 瓦匠들의 사적인 판매도 허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26) 이병희, 앞의 논문, 1999, 44쪽.

127) 『高麗史』 권33, 世家33, 충선왕 1년 8월. “辛亥 王命令富人 就宣義門內閑地 緣道作瓦屋 又命五部民家 皆盖以瓦 命毋禁私窯”

128) 서성호,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7, 47-50쪽.

2. 六窰의 해이와 私營瓦窰의 등장

13세기 고려는 전란으로 인해 국가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1231년(고종 18) 8월 시작된 몽골의 침략¹²⁹⁾으로 인해 개경이 포위당하고 흥왕사가 공격당하는 등¹³⁰⁾ 각종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듬해인 1232년(고종 19) 6월에는 강화도로 천도하여 새롭게 궁궐을 경영하고,¹³¹⁾ 7월 마침내 고종이 강화객관에 入御함으로써¹³²⁾ 개경은 오랫동안 비어 있게 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개경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¹³³⁾

이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259년(원종 즉위)에서야 고려는 몽골과 강화협상을 시도하면서 개경 복구를 시작하였다. 이때 여러 관료들과 관민·승도 등 백성들을 총동원하여 백성들을 개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가옥을 영조하기 시작하였으며,¹³⁴⁾ 창고를 열어 가옥을 짓는 자금을 보조하기도 하였는데,¹³⁵⁾ 이는 환도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 게다가 元에서 환도할 것을 종용하며 압박해오자 1270년(원종 11) 5월 沙坂宮에 입어함으로써 마침내 개경 환도가 이루어졌지만¹³⁶⁾ 아직 개경의 복구상황은 미진하였다.

㉓ 왕이 頭輦哥의 屯所에 행차하였는데, 갓 옛 수도로 나온지라 의관이 준비되지 않아 왕과 백관들이 모두 戎服 차림으로 갔다. 또 官廡도 없어 모두 장막에 거처하였다.¹³⁷⁾

㉔ 辛亥에 왕이 명하여 富人으로 하여금 宣義門 내의 閑地에 나아가 길을 따라 瓦屋을 짓게 하였다. 또 명령하여 5부의 민가는 모두 기와를 덮게 하고 私窰를

129) 『高麗史』 권23, 世家23, 고종 18년 8월. “壬午 蒙古元帥撒禮塔 圍咸新鎮 屠鐵州”

130) 『高麗史』 권23, 世家23, 고종 18년 12월. “壬子朔 蒙兵 分屯京城四門外 且攻興王寺”

131) 『高麗史』 권23, 世家23, 고종 19년 6월. “乙丑 崔瑀 魯王遷都江華 丙寅 瑀發二領軍 始營宮闕于江華”

132) 『高麗史』 권23, 世家23, 고종 19년 7월. “丙戌 入御江華客館”

133) 홍영의,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2010, 312-313쪽.

134) 『高麗史』 권25, 世家25, 원종 1년 2월. “乙丑 令大小官民僧道 各營屋宇於古京”

135) 『高麗史』 권25, 世家25, 원종 1년 3월. “戊辰朔 … 太孫欲還都舊京 以大將軍金方慶 將軍金承俊 給事中趙文胄 中丞金洪就 爲出排別監 發廩米六千四百二十斛 分給諸王百官 人一斛以助營屋之費”

136) 『高麗史』 권26, 世家26, 원종 11년 5월. “丙寅 王還舊京 御沙坂宮 妃嬪亦自江華至”

137) 『高麗史』 권26, 世家26, 원종 11년 6월. “乙亥 幸頭輦哥屯所 時初出古京 衣冠未備 王及百官 皆以戎服行 又無官廡 皆張幕以居”

금하지 말게 하였다.¹³⁸⁾

사료 ㉓에서 확인되듯이 당시 개경은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어 장막을 치고 기거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六窯시설 역시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板積窯 등 일부 六窯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¹³⁹⁾ 시설복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국가시설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던 것 같다.

이는 1309년(충선왕 1)의 기사 ㉔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때 富人들에게 선의문 안에 기와집을 짓게 하고 5부의 민가를 모두 기와로 덮게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민간에 대한 기와보급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조선전기의 別瓦窯 설치가 이를 원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는 후대의 별와요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화재 등의 위험을 줄이고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전에 제대로 된 관청건물도 없어서 고위관료들이 장막생활을 했었다는 ㉓의 기록으로 보면, 재정이 열악하여 六窯가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고 정부 기와수급 또한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私窯를 허용했다는 것은 六窯만으로 도성 내의 민가에 기와를 보급할 만큼의 충분한 생산량 확보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¹⁴⁰⁾

六窯체제 와해로 私設瓦窯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와의 수급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생산체제로 재편되었다. 이는 비단 六窯만이 아니라 고려후기의 전반적인 문제였다. 收租地가 격감하자 재정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공장을 제대로 확보·동원할 수 없는 실정이었던 것이다.¹⁴¹⁾ 이에 따라 고려후기의 기와 수급은 자체생산과 구입 및 주문생산 등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¹⁴²⁾ 瓦匠의 私的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㉕ 국도를 읍기면서부터 왕궁과 관부가 남김없이 파괴되었는데, 경오년(1270년,

138) 『高麗史』 권33, 世家33, 충선왕 1년 8월. “辛亥 王命令富人 就宣義門內閑地 緣道作瓦屋 又命五部民家 皆盖以瓦 命毋禁私窯.”

139) 「故密直副使致仕朴公墓誌」, 『東文選』 묘지. “至元十五年 由典理司書員 任全州臨陂縣尉 罷秩入內侍積年勞 歷板積窯直供驛司醞署令紫雲坊判官”

140) 홍영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몽골 침입 이후 궁궐·성곽 등 빈번한 토목공사와 사찰의 창건, 지배층의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 기와의 수요가 대량으로 증가하여 결국民間窯場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았다(홍영의, 앞의 논문, 2012, 324쪽).

141) 송성안, 앞의 논문, 1999, 140쪽.

142) 鄭治泳, 앞의 논문, 2006, 36-38쪽.

원중 11)에 옛 도성으로 돌아온 뒤에도 영건할 겨를이 없었다. 文翰官은 하루라도 그 장소가 없으면 옳지 않기 때문에, 이에 예전에 정사를 의논하던 청사를 하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60년 이상을 그대로 사용하며 날이 갈수록 頽圯하고 이를 제대로 보수하는 자가 있지 않았다. … 이에 公廩錢 약간 緡을 내놓았으나 부족하자 인가의 돈을 빌려 곧 재목과 기와를 사들였다. 관아에 인부를 청구했지만 얻지 못하여 곧 사적으로 工匠을 고용하고, 각자 집안의 하인들을 부역시키면서 직접 먹이고 직접 감독하였다.¹⁴³⁾

㉔ 김후(김취기)가 다시 나아가 청사를 돌아보고 한숨 쉬며 낭서에게 말하기를, “제군들이 이곳에 와서 각각 몇 해가 되었는가? 公宇에는 책임이 있는데 누가 맡았는가.” 하고, 또 軍衛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곳은 너희들이 날마다 모여서 호령을 여쭙는 곳이 아닌가? 쓰러지고 무너짐이 이에 이르렀는데 너희들은 어찌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 사람들이 막지 않는다면 어찌 거두어 고치지 않는가?” … 이에 명령을 내려 중창하게 하고, 이어 좌랑 김완에게 위임하여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김군이 이에 公庫의 남은 재물을 내어 먼저 목재와 기와를 사들였다. 모든 기획이 지성에서 나왔으므로 군졸들이 즐겁게 달려들어 독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갖추어졌다. 이듬해 경오년 2월에 시작하여 5월에 일을 마쳤다.¹⁴⁴⁾

사료 ㉔는 1333년(충숙왕 복위2)의 기록으로, 李穀(1298~1351)이 청사를 보수한 내용이다. 이곡은 60여 년이나 방치된 관가를 보수하기 위해 人家의 돈을 차용하여 재목과 기와를 사들였다. 개경 환도 후 60년이 지나도록 관사를 수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정부는 관사조차 수리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관아에 인부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私적으로 工匠을 고용하였다.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인가의 돈을 빌려 썼더라도 工匠을 사적으로 고용해야 할 정도로 국가의 수공업체계는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재목과 기와를 사들이고 있는 부분이 주목되는데, 六窯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공장을 고용할 필요도 없이 六窯에서 기와를 수급했을 것이다.

사료 ㉕은 崔滢(1287~1340)가 1334년(충숙왕 복위3)에 남긴 기록으로, 군부사

143) 李穀, 『稼亭集』 권2, 禁內廳事重建記. “自國都遷徙 王宮官府破壞無遺 庚午復都之後 未遑營構 以文翰官不可一日無其所 乃賜舊議政之堂 因仍餘六十年 日趨頽圯 未有能修葺者 … 於是 出公廩錢若干緡 不足則借錢人家 立市材瓦 請夫於官不得 則私雇工匠 各役家僮 自食之 而自督之”

144) 崔滢, 『拙藁千百』 권1, 軍簿司重新廳事記. “侯復進之 顧視廳事 而喟然謂郎署曰 諸君到此 各有幾年 公宇有責 誰任之者 又謂軍衛曰 此非若輩日聚會稟號令之所乎 頽壞至此 若輩豈不羞耶 諸人苟不拒者 盍撤而改爲之乎 … 仍委佐郎金君玩董其役 金君乃出公庫羨財 先市材瓦 凡所指畫 皆出至誠 故軍卒樂其赴 不督而自辦 經始於翌年庚午二月 至五月而功告訖”

의 보수 내용을 담고 있다. 군부사의 수리는 1330년(충숙왕 17) 2월에 시작하여 5월에 준공되었다. 사료 ㉔와 마찬가지로 군부사는 60여 년이나 보수하지 못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김취기는 군부사 이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좌랑 김완에게 명하여 관사를 보수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김완은 국가 창고의 재물을 목재와 기와구매에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재목과 기와를 구입하고 있으며 六窯체제가 무너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경에서 재목과 기와를 사들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개경의 경우 상시적인 기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私設瓦窯의 운영이 가능했고, 六窯가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기와수요의 증가는 私窯 운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고려 정부에서 사요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려후기로 넘어오면서 시장에서 재물을 취하는 것은 당시 재정확보 방법 중 하나로써 이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권세가나 사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교역이 이루어졌고,¹⁴⁵⁾ 기와도 강제적 수취를 통해 조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㉕ 工商은 필요에 따라 이롭게 하여 생활을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관아에서 구하는 것을 다 시장에서 갖다 쓰는데, 혹은 그 값을 누르기도 하고 혹은 끝내 값을 지불하지 않기도 하여 工商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 마땅히 유사에 명하여 금하소서.¹⁴⁶⁾

사료 ㉕은 1296년(충렬왕 22) 2월 中贊 韓康이 충렬왕에게 진언한 내용 중 하나이다. 이때 관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가져다 쓰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었던 것 같다. 장인들이 상인들과 연계하여 잉여생산물을 개경의 경시에서 판매했던 내용을 반증한다. 그런데 관사에서 물건을 가져다 쓰고는 값을 치루지 않는

145) 박종진, 「고려후기 재정운영의 변화」,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263쪽. 이에 따르면 고려시기의 상업은 도시상업과 지방상업의 이중구조를 가졌으며, 특히 시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상업이 활발했다. 한편 고려시기의 유통구조는 지배층 중심과 직접생산자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배층이 강제적으로 직접생산자들의 잉여를 침탈하여 재정확보를 이루었다. 침탈 방법으로는 代納·防納·抑買·反同 등이 있으며, 원 간섭기 이후 일반화되었다.

146) 『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 22년 2월. “工商 所以利用而厚生也 今諸司所需 皆取於市 或抑其估 或終不給直 工商不勝其苦 宜令有司禁之”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시장에서 상공인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일이 中贊 洪子藩의 便民事,¹⁴⁷⁾ 충선왕 즉위교서,¹⁴⁸⁾ 충선왕 복위교서¹⁴⁹⁾ 등에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개경에서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와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취체제의 하나인 貢賦의 변동에서도 기인하는데, 이를 所의 붕괴와 현물세인 상요·잡공의 등장, 혹은 공물대납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한다.¹⁵⁰⁾ 즉 국가재정의 궁핍 등으로 인해 현물수취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물의 생산·유통이 촉진되었으며, 현물을 대납하며 이득을 취했던 상인이 등장하면서 시장교역이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¹⁵¹⁾ 또 工匠들의 잉여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물 판매를 통한 이득의 확대는 민간수공업의 발달로 이어졌다. 특히 부세수탈로 인한 所民들의 저항, 所民의 입공에 의한 縣 승격, 지방제도의 정비에 따른 군현제의 개편 등 所수공업 체제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민간수공업의 확장으로 연결되었다.¹⁵²⁾

이처럼 개경에서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¹⁵³⁾ 관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거나, 將作監과 같은 정부의 각 관부에 출입하면서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상인들도 있었다.¹⁵⁴⁾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개경에서는 기와의 수급이 필요할 경우 이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작감의 사례와 같이 상인들이 물품을 공급하는 환경

147) 『高麗史』 권84, 刑法1, 직제, 충렬왕 22년 5월. “大府迎送國驢等庫 凡有所之物 於京市求之 雖云和買 實爲強奪 誠宜禁之”

148) 『高麗史』 권84, 刑法1, 직제, 충렬왕 24년 정월. “王京一國之本 要令人物安堵 不可搔擾 自今以後各司 凡所順 不得於市塵侵奪 如不得已 而徵求 當與其直”

149) 『高麗史』 권79, 食貨2, 차대, 충렬왕 34년 11월. “忠宣王下教 一 市肆商賈 質遷有無資生 在前迎送國驢宴禮 諸色官 虛給文契 取用百物 不還其直甚者 公然攬奪 怨讟不少 宜令各司 檢考文契 如數歸還 今後盡行雇買 不得騷擾”

150) 김동철, 「고려 말의 유통구조와 상인」, 『역사와 세계』 9, 효원사학회, 1985, 207-208쪽.

151) 김동철, 위의 논문, 1985, 208쪽.

152) 김현영,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론』 15, 서울대학교, 1986, 127쪽; 김동철, 위의 논문, 1985, 212-218쪽.

153) 『高麗史』 권79, 食貨2, 市估條. “己卯二年春正月 定都于松嶽之陽 創宮闕置三省·六尚書·官九寺立市塵 辦坊里分五部置六衛” 고려시대는 중앙의 市塵과 지방의 場市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였다. 개경에 시전을 처음 설치한 것은 919년(태조 2)이었다. 시전상가는 1208년(희종 4), 1307년(충렬왕 33), 1377년(우왕 3)에 각각 고치고 확장하였다. 시전은 경시서의 감독을 받는 상설상점이었으며, 長廊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의 기록만으로 도시상업의 양상을 잘 알 수는 없으나, 국가에서 이를 지어서 상인들에게 대여하거나 權貴와 寺院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주로 개경에서 관부, 권귀, 사원과 연결된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權寧國의, 『譯註 高麗史 食貨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01쪽).

154) 『高麗史』 권85, 刑法2, 禁令. “文宗八年 以將作監商人 故燒官炭庫 判決脊杖二十 鈹面配島”

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窯에 속한 瓦匠들의 생산 활동을 상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방의 상업은 비상설적인 장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2세기 초 고려의 사정을 전하는 사료에 의하면 한 낮이나 아침, 저녁으로 도시 부근에 장시가 개설되었음을 보여준다.¹⁵⁵⁾ 이러한 이유로 지방 관청의 수축이나 사원 등의 조영에 필요한 물품 조달은 필요할 때마다 인근에서 마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瓦窯처럼 막대한 생산 재료의 공급과 노동력이 필요한 시설들은 수요지 근처에 설치하여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사례를 잘 표현하고 있다.

㉘ 지정 정미년에 판사 韓公 系祥이 전주 목사가 되었다. … “청사 북쪽에 작은 정자가 있어 綠筠軒이라 부르는데, 좁고 막힘이 심해 거처할 수가 없다. 관청에서 비용을 덜 터이니 정자를 바꾸어 누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하였다. 이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장인을 모아 지방 용마루를 옮기고 흠손질을 하여 기와를 엮었다. 미치지 못할 것같이 하여 며칠도 안 되어 준공되었다.¹⁵⁶⁾

㉙ 知州 尹尙發은 그 낡음을 슬피 여겨, 나무를 찍고 풀을 베어 작은 정자를 세우고 임기가 차서 떠났다. 金公이 뒤를 이어 왔는데, 곧 또 말하기를, “윤공이 할 수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렸을 뿐이다.” 하고는 이에 아전들과 같이 땅을 더욱 넓히고 산에서 재목을 취하고 들에서 기와를 구워 두 달 만에 건축 공사를 끝내었다.¹⁵⁷⁾

사료 ㉘에서 1367년(공민왕 17) 판사 한계상이 전주 목사로 부임한 후 낡은 정자를 누각으로 고쳐지었는데, 이때의 비용은 관청 몫이었다. 그리고 장인들을 모아 흠손질을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직접 기와를 구웠던 것으로 보이

155) 『宋史』 권487, 外國3 高麗;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 城邑, 貿易. “蓋其俗無居肆 惟以日中爲虛 男女老幼官吏工技 各以其所有 用以交易 無泉貨之法 惟紵布銀餅 以准其直 至日用微物 不及疋兩者 則以米計鎰銖而償之 然民久安其俗 自以爲便也”; 이러한 장시는 郡縣市的 성격을 보이지만 아직 정기적으로 개설되지 못하는 비상설시장이었으며, 지역적으로 농민과 수공업자 등의 직접생산자 계층이 중심이 되어 교역하기 편리한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행정도시에 개설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權寧國 外, 앞의 책, 1996, 301쪽).

156) 李達衷, 『霽亭集』 권3, 全州觀風樓記, “至正丁未 判事韓公系祥出牧于全 … 廳事之北 有小亭曰綠筠軒 甚陋塞不堪處也 官給其費 易亭而樓之可乎 咸曰固所望也 於是趨奔走聚工 徙棟宇而墁瓦之 猶恐不及 不日而告成”

157) 李穡, 『牧隱集』 권3, 谷州公館新樓記, “知州尹尙發 慨其故 伐樹誅茅 置小亭 政滿而去 金公繼至 則又曰 尹公非不能也 待我耳 乃與吏益拓其地 取材于山 陶瓦于野 閱兩月而斤斧之 功告畢矣.”

며, 관청의 조영이라는 사안에서 본다면 인근에서 와장을 불러 모아 기와생산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기록인 사료 ㉔에서도 기와를 구웠다는 표현으로 보아 관청 조영에는 인근에서 활동하는 와장들을 모집하여 직접 기와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문의 내용에서와 같이 ‘산에서 재목을 취하고 들에서 기와를 구웠다’는 표현은 누각 근처의 공터에 임시로 瓦窯를 설치한 후에 기와를 생산했다는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당시 와장은 필요한 곳에서 바로 기와를 제조하고 생산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기능적 특징이지만, 官의 명령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장인의 수가 많았음도 짐작 가능하다. 이로써 본다면 고려후기의 관청 수축이나 사대부의 가옥을 영건할 때 필요한 장인의 招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인의 초치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장인들은 지방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관청이나 사원 또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⁸⁾

瓦匠의 모집과 고용 방식을 통하여 급료 형식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役價를 지급받았던 와장의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私窯의 범주에 포괄시킬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瓦窯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瓦匠의 노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官이나 寺院에서 瓦匠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官營瓦窯의 해이와 私窯의 확대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㉔ 驪興 閔祥伯이 이 주에 刺史로 부임하여 1년이 못 되어 사무가 정돈되고 행정
이 잘되었다. 여러 정사에 여가가 있어 공은 이에 연이어 관리들에게 문서를
나누어 장인을 모아 역을 징집하여 고을을 수리하도록 시켰다. 관사·창고·학교·
사찰·정자 등 猥陋하고 弊亡한 것을 모두 고치고 복구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생각건대 수령은 지위가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앉아 있는 것이며 농사
를 장려하는 직책을 갖고 있으니, 백성에게 농사짓는 것을 시범하는 교육을 등
한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의 읍내는 두 道의 요충 지점에 있어서 이쪽 방
면에서 변화한 도회로 불리고 있으므로,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전송하는 예절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 東亭은 두 가지의 행사를 다할 수 있는 곳이니, 이보다

158) 앞의 주)153에서와 같이 권귀나 사원에 연결된 장인이 있었음은 생산량의 조절이나 공급 조절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권귀나 사원 자체에서 물품의 생산을 담당하였던 생산 체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영준의 앞의 논문, 2004를 참조 바람.

더 급한 일이 없다. 건축 공사는 이 정자부터 시작하라.” 하였다. 그러자 서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傭夫는 힘을 다하였다. 북을 울려 부르기를 기다리기 전에 모였고, 繩杖으로 꾸짖어 괴롭히지 않아도 부지런하였다. 목재는 상류에서 띄어 보냈고, 흙은 동쪽 언덕에서 구웠다. 그리하여 공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임했다.¹⁵⁹⁾

㉓ 온 고을 사람들이 행하여 豪強을 묻지 않고 戶役을 고르게 할당하였다. 재목을 준비하고 기와를 구워서 먼저 神宮과 禮殿과 齋房을 새롭게 하니 모두 높고 빛났다.¹⁶⁰⁾

사료 ㉓에서 여흥 민상백¹⁶¹⁾의 공주자사 부임은 관청보수 활동으로 짐작된다. 1년 만에 마을의 행정업무를 안정시킨 후 소속 관료들을 시켜 인부를 모집하게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건물들을 보수하는 한편 관의 업무를 위해 東亭을 최우선으로 지을 것을 명하였다. 이에 강의 상류에서 재목을 구해 배로 운송하고 동쪽 언덕에서 흙을 구웠는데[陶埴], 재목과 기와를 보통 ‘材瓦’로 묶어 표현한다는 점에서 흙을 굽는다는 것은 건축공사에 필요한 기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목 중에는 건물에 쓰일 목재뿐만 아니라 와요에 쓰일 땀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며, 동쪽 언덕에서 기와를 구웠다는 것으로 보아 東亭과 瓦窯 역시 근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다. 東亭이 읍내에서 동편으로 2백 보쯤 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쪽 언덕 근처에 설치한 瓦窯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사료 ㉓은 1349년(충정왕 1)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지방관아에서 시행한 인부 동원방식을 엿볼 수 있다. 瓦匠의 경우는 官에 속한 工匠이 있었거나 따로 모집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재목을 구하고 와장의 일을 보좌하는 조역인의 역할은 역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동원했던 것 같다.

그런데 재목과 기와를 직접 조달하는 지방관아의 모습은 시장에서 기와를 구

159) 釋息影庵, 『東文選』 권65, 公州東亭記. “驪輿閔祥伯 刺是州 年末期 職修治成 庶政有餘暇 公乃分牒聯屬 聚工徵役 將使州治之 館舍庫廩庠塾寺院亭觀之 猥陋弊亡者 靡不革復之 公之言曰 顧員位 居牧人之長 帶勸農之職 示民播藝之教 不可忽也 又州治在二道要衝 號一方繁會 候賓餞勞之禮 抑所重也 夫東亭二事之所由行也 此莫急焉 亟宇之繇茲亭始 於是胥徒盡心 傭夫畢力 集不待磬鼓之召 勤不煩繩杖之督 流材于上游 陶埴于東阜 而公曉夕親臨之.”

160) 李穀, 『稼亭集』 권6, 寧州懷古亭記. “於是 舉一邑之人 無問豪強 戶役而均程之 度材陶瓦 先新神宮禮殿齋房 一皆輪奐”

161) 민상백의 생몰년은 분명하지 않으나, 『萬家譜』 11책 32면에 閔漬의 자이며 閔祥正(1281~1352)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어 14세기 초반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상정은 『高麗史』 '列傳'에 민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입하였던 개경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지방은 상시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私營瓦窯를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관아에서는 瓦匠 등의 기술자를 모아서 직접 瓦窯를 설치해 기와를 조달하는 편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즉 工匠이 고용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 ㉔ 무릇 재목을 자르고 기와를 굽는 것을 모두 雇直하는 무리들에게 시켜 공사를 부지런히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달포 동안 일하는데 백성들이 괴로움을 알지 못했다.¹⁶²⁾

정도전이 1389년(공양왕 1) 12월 병오일에 명을 받아 달포동안 공사를 감독하면서 재목을 구하고 기와 굽는 일을 ‘雇直’하는 무리들에게 시켰다. 뒤이어 백성들을 독촉하였음에도 괴로움을 알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한 달 여를 독촉하였음에도 힘들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고직, 즉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雇直之徒’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고용노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집단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시장상황이 고용노동자들을 필요로 할 만큼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또한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초보적이기는 하나 고용노동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㉕ 이에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10여 일 동안 백성의 힘을 빌려서 벌목하고 시내로 띄어, 일하는 곳에 이르니 정자 옆에窯가 있어 기와 굽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기와를) 굽게 하고 먹이는 일로 값을 돌려 그 功役을 덜었다. 이때 노는 일꾼들을 시켜서 기일을 정하고 지으니, 그해 가을 7월에 시작하여 며칠이 안 되어 준공하게 되었다.¹⁶³⁾

1393년(태조 2)의 공사를 기록한 사료 ㉕에서도 노동력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162) 鄭道傳, 『三峰集』 권4,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 “凡削材搏瓦 皆役雇直之徒 而督勤工繕 經營於旬月之間 民不知勞”

163) 李詹, 『樂民亭記』, 『東文選』 권77. “乃謀於衆 借民力一旬 伐木流川 至役所亭側有窯 人方陶瓦 繼而燔之 食功歸直 故功役省 於是役遊手者 指期經營 始於其年秋七月 不日告成”

라는 개념이 드러나고 있다. 정자를 지을 자리 옆에 기와를 굽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이는 일[食功]’로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값의 대상은 기와인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기와 값을 한 번에 치른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식비를 해결해줬다는 점에서 日料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와장은 대가의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賃勞動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원에서조차 인부를 고용했던 사례가 있다.

㉔ 즉시 그 일을 나누어 맡아서 널리 중생의 인연을 모았다. 산에서 재목을 채취하고,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고, 일에 능한 雇夫를 세내어 돌을 갈고 기와를 구웠다.¹⁶⁴⁾

사료 ㉔은 1324년~1327년(泰定 연간, 충숙왕 11~14) 사이에 比丘 宏辨이 퇴폐한 장안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중건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이때 雇夫를 세내었는데 고용된 인부는 고용노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石匠, 瓦匠 등의 工匠이었을 것이다. 기술자 외의 노동력은 사찰 내의 승도나 신도들을 동원하여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⁶⁵⁾ 반면에 석장이나 와장 등 기술을 가진 공장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었으므로 대가를 지불하여서라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장에게 役價를 지급하는 일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며, 이전부터 고려 정부가 공장들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瓦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1249년(고종 36)에는 궁궐복구에 동원된 공장들에게 은 20근과 포 200정을 하사했던 사례는¹⁶⁶⁾ 참고할 만하다. 같은 의미에서 1274년(원종 15) 원의 요청으로 일본원정 전함을 건조한 공장들과 인부들에게 糧料를 지급한 내용을 잠시 살

164) 李穀, 『稼亭集』 권6, 金剛山長安寺重興碑. “卽分幹其事 廣集衆緣 取材於山 鳩食於人 僦面雇夫 磨石陶瓦”

165) 이상선, 「고려 사원의 촌락지배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11,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구산우, 「고려시기의 촌락과 사원 : 在家和尚·隨院僧徒의 실체와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2002. 이에 따르면 향·부곡·소 등이 사원에 예속되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예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밀접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맺으면서 불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66) 『高麗史』 권23, 世家23, 고종 36년 4월. “丙辰 還御本闕 饗監役官僚 及役徒 賜工匠銀二十斤 布二百匹”

펴보겠다.

- ㉟ 정월 15일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그 工匠人夫가 3만 500명인데 1인에 1일 3 때의 양식을 계산하여 3朔에 미치면 합 3만 4,312碩 5斗를 지급하게 됩니다. … 또 지난해에 전함을 영조하고 4월에 대군이 耽羅에 들어가 토적하여 5월 그믐에 이르러 돌아왔기 때문에 백성이 때를 맞춰 경작하지 못하여 가을에 수확이 없었으므로 또 관민에게 수렴하여 비로소 造船工匠과 屯住經行軍馬 및 濟州 백성 등의 糧料를 應副하게 되었는데 합계 4만여 석이었습니다.¹⁶⁷⁾

이때 전라도와 제주에서 大船 3백 척을 건조하면서 동원된 공장과 인부는 3만 500명인데, 3개월분 급료로 총 3만 4312석 5두의 糧料를 지급했다. 여기에서 양료는 1일 3식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매일 끼니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하고 있다. 또 1273년 金方慶이 토벌군을 이끌고 삼별초를 토벌하기에 앞서 전함을 영조했는데, 여기에 동원된 造船工匠과 屯住經行軍馬 및 濟州 백성들에게 총 4만여 석의 양료를 지급했다. 이때 경작을 못하여 수확이 없자 官民에게 따로 세금을 걷으면서까지 양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은 공역마저도 임노동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¹⁶⁸⁾ 또한 궁궐복원에 동원된 공장들에게 銀을 하사했던 사례 등은 직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끼니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고려 정부와 관아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고려후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재정이 악화된 상황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 권세가들의 지속적인 토지점령 확대와 이에 따른 수조지 감소, 농민의 유망으로 인한 호구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공장별사 등 직역자들의 녹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¹⁶⁹⁾ 농민들도 경제적 몰락이 심해지자 국가의 수탈을 피해 농장과 사원에 투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나서기도 하였다.¹⁷⁰⁾ 심지어 양반들도 요역에 징발되

167) 『高麗史』 권27, 世家27, 원종 15년 2월. “自正月十五日始役 其工匠人奚三萬五百名 計人一日三時糧 比及三朔 合支 三萬四千三百一十二碩五斗 … 又年前 營造戰艦 至四月 大軍 入耽羅討賊 至五月晦 還 故百姓 未得趁時耕作 秋無收穫 又斂官民 始應副造船匠 及屯住經行軍馬 與濟州百姓等 糧料 計四萬餘碩”

168) 김동철, 「수공업」,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2003, 349쪽.

169) 송성안, 앞의 논문, 1999, 26쪽.

170) 강승호, 「조선시대 고공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5, 14쪽.

어 궁궐공사에 동원되었는데, 이때 녹패를 팔아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입역시키기도 하였다.¹⁷¹⁾ 이처럼 고려후기에는 여러 형태의 고용노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지급된 양료에 대한 관례는 자연스럽게 조선왕조로 이어지게 되었다.¹⁷²⁾

㉞ 지난번에 賑濟를 받고자 하는 승도들이 있으므로 세 끼니를 금식하고 瓦窯에 노역하게 하였더니, 그 중들이 노역을 꺼려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만약 굶주림은 절박한데 빌어먹을 곳이 없다면 노역을 꺼려해서 도망칠 이치가 있겠습니까.¹⁷³⁾

㉟ 瓦匠, 助役人과 흙 밟는 소를 먹일 쌀과 콩은 첫 해에는 수량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음 해부터는 기와로서 값을 지급하며,醬과 魚藿은 각 관청의 陳醬과 더불어 사재감과 의영고에 있는 魚藿으로 지급할 것.¹⁷⁴⁾

㉞의 기사는 1424년(세종 6) 조선정부가 賑濟를 받고자 하는 중들에게 하루 세 끼 식사의 대가로 노동력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력의 대가로 끼니를 제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지만, 결과적으로 세 끼의 식사와 하루 노동력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때 승도들이 노역한 장소가 瓦窯였는데 이전 시기부터 와요에서 노동력의 대가로 하루 세 끼의 식사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사례이다.

사료 ㉟은 1426년(세종 8)의 내용으로, 화재를 당한 가옥과 가난하여 기와를 올릴 수 없는 자에게 기와를 제공하기 위한 別瓦窯 설치기사이다. 위 조항은 瓦匠과 助役人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첫 해에는 쌀로서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는 기와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와의 잉여생산이 가능했으며, 이와 동시에 기와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이전 왕조부터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첫 해에는 화

171) 『高麗史』 권29, 세가29, 충렬왕 6년 3월. “壬子 監察司言 … 且修宮室 今已三載 而兩班無僕隸者 只賣祿牌 雇傭赴役 或有躬自執役者 亦請除之 以族農隙”

172) 이를 조선시대 ‘雇工’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강승호, 위의 논문, 2005, 11-18쪽).

173) 『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신해. “曩者 僧徒有欲受賑濟者 令給食三時 役於瓦窯 其僧徒憚役盡逃 若飢餓已迫 而無乞食之處 則安有憚役逃避之理哉”

174)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계사. “瓦匠助役人 供給及踏泥牛養飼米豆 初年酌量支給 自次年以瓦價供給 其醬及魚藿 以各司陳醬 及司宰監 義盈庫陳 魚藿支給”

재를 당한 가옥 등에 기와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와장들에게 기와를 급료로 지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조선 초기에 쌀 대신 기와를 급료로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와의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와가 지니는 재화가치를 인정하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인 고려후기에 이미 기와의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에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여러 기록은 고려 정부의 私窯 허용과 瓦匠의 고용노동이 가능했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즉, 고려전기에는 공장별사를 통해 役價를 받았던 수공업자들이 1년에 300일 이상 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일부만이 존재했다면,¹⁷⁵⁾ 고려후기로 넘어오면서 노임형태의 공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瓦窯에서 일하는 瓦匠이나 助役人들 역시 노임형태의 대가, 즉 급료를 받으면서 기와를 생산했음이 확인된다.

고려후기의 賃勞動에 대한 인식은 사원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원에서 공장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고려후기에는 非僧非俗으로 분류되는 광범한 존재들이 사원과 촌락과의 경제적인 연관 속에서 수공업품을 생산하고 있었다.¹⁷⁶⁾ 이들은 촌락과 사원을 오가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⁷⁷⁾ 이중에서도 隨院僧徒로 일컬어지는 자들이 수공업이나 농업생산, 토목공사에 동원되기도 하였는데, 고려후기에는 국역을 비롯해 부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수원승도가 되기도 하였다.¹⁷⁸⁾

⊗ 조후가 절을 경영할 적에 그 경내의 승도들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浮圖者는 내가 안다. 위로는 四恩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三塗를 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가령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면서 배움도 끊고 하는 일이 없는 자는 상등이 되고, 부지런히 講說하여 힘써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는 다음이 되고, 머리 깎고 집에 살면서 부세를 피하고 재산을 모으는 자는 곧 하등이 된다.

175) 서명희, 「수공업」,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427-428쪽.

176) 구산우, 「고려시기의 촌락과 사원 : 在家和尚·隨院僧徒의 실체와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2002.

177) 구산우, 위의 논문, 2002. 26-37쪽.

178) 林英正, 「高麗隨院僧徒再考」, 『東國史學』 37, 東國大學校, 2002; 한기문, 「高麗時代 寺院의 運營基盤과 願堂의 存在樣相」,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5. 77-85쪽.

승려로서 하등이 되는 것은 佛氏의 죄인이 아닌가. 또한 국가의 游民이다. 너희들은 이미 관가의 役이 없으니, 나를 돕지 않는 자는 벌하겠다.” 하였다. 이에 머리 깎은 무리들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다투어 재주 있는 대로 가지고 와서 도끼질하는 자는 도끼질하고 톱질하는 자는 톱질하여 길들지 않은 나무를 깎고 진흙으로 벽을 발랐다. 조후는 집에서 곡식을 날라 먹이고 지붕 기와를 거두어 덮었다. 백성의 힘을 빌지 않고 며칠도 되지 않아 완성하였다.¹⁷⁹⁾

사료 ㉔은 1339년(충숙왕 복위 8)에 雙城總管 趙侯가 사원경영을 할 때의 일을 기록한 내용이다. 조후는 승려의 자질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하등은 머리를 깎고 집에 살면서 부역과 세금을 피하고 재산을 모으는 자라며 질책하고 있다. 그러자 기술을 가진 자들이 공사를 자원하여 사원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조후는 승려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로 식대를 지불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로 일반화되고 있었던 것이다.¹⁸⁰⁾

위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머리를 깎고 집에 살면서[髡而家居] 부세를 피하고 재산을 모으는[逃賦而營產]’ 자들이다. 같은 표현이 『重房新作公廡記』에도 나오는데, 공역하는 工匠들에 대해 ‘머리를 깎고 집에 있는 자[髡而家居者]로 품삯을 받고 다투어 나아갔다[受傭競進]’고 묘사되었다.¹⁸¹⁾ 이들은 속세를 벗어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이 있으면 품삯을 받으면서 재산을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려처럼 부역과 세금을 피하는 非僧非俗의 존재들이었다. 소수공업의 해체와 함께 관영수공업체제가 무너지면서 공장들은 생계를 위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는데, 사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전부터 사원에 예속되어 있던 공장승과 더불어 사원수공업을 담당하면서 자신들만의 생산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어 나갔다.

㉔ 士大夫가 집 한 채를 경영하는 데에도 반드시 승도들을 청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手段을 배워 익숙하고 또 家計가 없어 오로지 일에 부릴 수 있습니다. 승

179) 李穀, 『稼亭集』 권3, 扞置金剛都山寺記. “侯之經營是寺也 令其境內僧徒曰 爲浮圖者吾知之矣 其不曰上報四恩 下濟三塗乎 若飢餐渴飲 絕學無爲者上也 勤勤講說 孜孜化誘者次也 髡而家居 逃賦而營產 斯爲下矣 僧而爲下 不惟佛氏之罪人 亦國家之游民也 爾既不役於官 而又不吾助者罰 於是衆髡且慚且喜 爭執藝事以來 斧者斧之 鋸者鋸之 撲斲之塗墍之 侯輸家粟以食之 撤屋瓦以蓋之 不借民力 不日成之”

180) 전영준, 앞의 논문, 2004, 93쪽.

181) 李穡, 『牧隱集』 권6, 重房新作公廡記. “其工匠則髡而家居者 受傭競進”

도들도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衣食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궁궐을 창건하여 세우는데 어찌 익숙지 못한 사람을 쓰겠습니까?¹⁸²⁾

사료 ㉔에서도 확인되듯이 조선 초기 한양에 신도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노동력, 즉 공장과 인부를 승도에게서 징발하고 있다. 이를 건의한 大司憲 朴經 등은 농민을 동원했을 때 농사가 늦어지거나 폐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승도에게 기술이 있고 건물 짓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 다시 말해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지닌 높은 수준의 기능이 인정되었던 것인데,¹⁸³⁾ 이는 고려 후기 사원에 의탁하여 생계를 꾸려나갔던 수공업자들의 실태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려 후기 사원수공업 체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조선왕조 초기에 별와요를 운영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2) 『太祖實錄』 권7, 태조 4년 2월 계미. “士大夫營一家 必請僧以役者 手段熟習 且無家計而用工專也 僧亦樂於趨事者 以其有資於衣食也 況創立宮闕 豈可容拙手於其間哉”

183) 전영준, 앞의 논문, 2004, 88-96쪽.

IV. 結論

고려시대의 기와생산체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高麗史』 「食貨志」 및 「百官志」에 기록된 ‘諸窯直’과 ‘六窯直’의 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우선 諸窯直은 ‘여러 요의 직’을 아울러 일컬었던 용어로서 이는 諸牧監直·諸陵直·諸眞殿直 등과 板積窯直 등의 용례와 「食貨志」 서술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諸窯에서는 기와의 생산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제요직과 조선초기의 東西瓦窯, 瓦書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였던 당대의 인식과 『高麗史』 기사에서 확인되었다. 또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板積’, ‘赤項’, ‘月蓋’, ‘德水’ 등의 명문기와의 지칭하는 窯址 중 판적요·덕수요 생산기와는 별궁이나 사찰창건에 직접 활용되었으며, 와요가 수요지 인근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諸窯가 개경 인근의 기와 생산시설로서 기능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도자기 등의 요업은 瓷器所와 같은 所수공업체제 안에서 생산되었고 그 수취는 尙食局이 담당했었기 때문에 諸窯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즉 고려는 전기부터 도읍인 개경에 諸窯를 설치하고 각 窯마다 諸窯直을 두어 기와 생산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諸窯는 궁궐과 관청, 사원에 기와·벽돌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종조에는 諸窯直 대신 六窯直이 나타나는데, 六窯直은 제요직처럼 ‘여섯 개의 요의 직’으로 풀이할 수 있었다. 이는 사찰창건 등 빈번한 공사로 인해 설치되었던 많은 수의 와요가 문종~인종 연간에 여섯 개로 정리되면서 六窯直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정부는 여섯 개의 瓦窯를 운영함으로써 도성의 기와수급을 담당케 하였으며 각 窯마다 窯直을 두어 窯業場을 관리했다. 이때부터 고려의 기와생산체제는 六窯체제로 재편되었다.

이후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개경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시설이 파괴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六窯체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고려는 六窯체제를 일부 복구했던 것 같다. 그러나 도성의 기와수급에 차질이 생겨 관청들은 개경 환도 이후 60여 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보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고려는 私窯 금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던 것이다.

私窯가 허용이 되자 개경에서의 기와수급은 시장매매를 통해 조절되었다. 관청에서 기와를 구매하여 청사를 보수하였던 것인데, 개경에서 私營瓦窯가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와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기와의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개인이 상설로 瓦窯를 운영할 만큼의 경제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관아에서는 瓦匠을 고용하여 임시로 瓦窯를 설치하는 등 기와생산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瓦匠이 賃勞動을 통해 이득을 취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고려는 권세가와 사원의 토지탈점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자 과렴 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세의 부담은 民의 이탈을 가져왔는데, 工匠들은 권세가나 사원에 투탁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회피했다. 이들은 非僧非俗으로 분류되어 사원과 촌락과의 경제적인 연관 속에서 수공업품을 생산하였다. 촌락과 사원을 오가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원수공업은 자신들만의 체제를 공고히 하며 수공업조직을 발달시켜 나갔다. 또 사원은 寶를 통해 경제적인 기반도 만들었는데, 이러한 사원의 수공업조직이 조선왕조로 이어졌다.

조선초기에 기와의 민간보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別瓦窯는 국가의 관리 하에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었다. 고려후기의 사원수공업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기와의 생산과 와요운명을 도맡았던 것이다. 특히 寶를 설치하여 별와요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던 것은 고려시기 사원의 모습과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조선 건국과 동시에 설치하였던 東西瓦窯는 고려시기의 六窯체제를 이어받아 도성의 기와수요에 대응하는 국가기반시설로써 운영되었다. 六窯와 마찬가지로 각窯에 東窯直·西窯直을 두어 한양의 도성건설에 필요한 기와와 벽돌을 생산하였다. 즉 고려의 六窯체제가 東西瓦窯로, 사원수공업이 別瓦窯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의 기와생산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의 생산체제를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기와의 생산체제가 兩朝간의 연결고리에서 파악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參考文獻>

1. 史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舊唐書』 『新唐書』 『宋史』 『元史』 『東文選』
『宣和奉使高麗圖經』 『稼亭集』 『牧隱集』 『霽亭集』 『拙藁千百』 『三峰集』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東國李相國集』 『經國大典』 『練藜室記述』
『增補文獻備考』

2. 研究著書

姜晉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 一潮閣, 1991, 改訂初版.
권병탁, 『傳統陶磁의 生産과 需要』,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0.
權寧國 외, 『譯註 高麗史 食貨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김난옥, 『高麗時代 賤事·賤役良人 研究』, 新書苑, 2000.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 技文堂, 1993.
金玉根, 『高麗財政史研究』, 一潮閣, 1996.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_____,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景仁文化社, 2011.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潮閣, 1996.
이재창, 『韓國佛教寺院經濟研究』, 불교시대사, 1993.
李炳熙, 『고려 후기 사원경제 연구』, 景仁文化社, 2008.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國學資料院, 2000.
崔貞煥, 『譯註 高麗史 百官志』, 景仁文化社, 2006.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復刊.

황의수, 『조전기와』, 대원사, 1990.

14세기고려사회성격연구반,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3. 研究論文

강만길, 「別瓦窯考 - 朝鮮時代の 製瓦業발전」, 『史學志』 1, 단국사학회, 1967.

_____, 「수공업」,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75.

具山祐,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역사와세계』 12, 부산대사학회, 1988.

_____, 「고려시기의 촌락과 사원 : 在家和尚·隨院僧徒의 실체와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2002.

김광수, 「高麗時代の 權務職」, 『한국사연구』 30, 한국사연구회, 1980.

김동철,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 『역사와 세계』 9, 효원사학회, 1985.

_____, 「수공업」,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2003.

金松姬, 「朝鮮初期의 提調制에 관한 研究」, 『동아시아문화연구』 12,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7.

김영원, 「陶器所·磁器所 問題와 分院時期의 對日貿易」, 『미술사논단』 20, 한국미술연구소, 2005.

김윤정,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 260, 2008.

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 15, 서울대학교, 1986.

박경자, 「14세기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 237·238, 한국미술사학회, 2003.

朴宗基,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所 生産體制」,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徐明禧, 「高麗時代 鐵所에 대한 研究」, 『한국사연구』 69, 한국사연구회, 1990.

_____, 「수공업」,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 徐聖鎬, 「高麗前期 지배체제와 工匠」, 『韓國史論』 27, 국사편찬위원회, 1992.
- _____, 「高麗 수공업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韓國史論』 41·4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9
- 송수환, 「조선전기의 司饗院」, 『韓國史學報』 3·4, 고려사학회, 1998.
- 魏恩淑, 「고려후기 직물수공업의 구조변동과 그 성격」, 『韓國文化研究』 6,釜山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3.
- 이병희, 「조선전기 도자기 수공업의 편제와 운영」, 『역사와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 李相瑄, 「高麗 寺院의 商行爲 考」, 『성신사학』 9, 동선사학회, 1991.
- _____, 「고려 사원의 촌락지배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11,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 이정신, 「高麗時代 종이의 생산 실태와 紙所」, 『韓國史學報』 5, 고려사학회, 1998.
- _____, 「高麗時代의 漁業 實態와 魚梁所」, 『韓國史學報』 3·4, 고려사학회, 1998.
- _____, 「고려시대 茶생산과 茶所」, 『한국중세사연구』 6, 한국중세사학회, 1999.
- _____, 「고려시대 銅의 사용현황과 銅所」,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2006.
- _____,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2007.
- _____, 「고려시대 금은채굴과 금소·은소」, 『역사와담론』 57, 호서사학회, 2010.
- 이혜옥,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 李喜寬·崔健,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 한국미술사학회, 2001.
- 임영정, 「高麗時代 使役·工匠僧에 대하여」, 『韓國佛教文化思想史』 上, 伽山文庫, 1992.

- _____, 「高麗隨院僧徒再考」, 『東國史學』 37, 東國大學校, 2002.
- 전병무, 「고려시대 은유통과 은소」,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1992.
- 田勝昌,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 18, 미술사연구회, 2004.
- 전영준, 「麗末鮮初 供役僧의 寺院 造營 활동」, 『전남사학』 24, 전남사학회, 2005.
- _____, 「고려시대 사원불사와 공역승」, 『역사민속학』 20, 역사민속학회, 2005.
- _____, 「조선전기 관찬지리지로 본 楮·紙 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11.
- 鄭治泳, 「高麗~朝鮮 前期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 중부고고학회, 2006.
- 최문환, 「조선시대 기와유통 연구 - 가마의 위치와 운송을 중심으로」, 『史學志』 42, 단국사학회, 2010.
- 崔貞煥, 「權務官의 概念에 대한 再檢討」, 『한국중세사연구』 11, 한국중세사학회, 2001.
- 한성욱, 「康津 靑瓷의 生産과 流通」, 『文化史學』 34, 한국문화사학회, 2010.
- 한정수, 「조선전기 제지(製紙) 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 한희숙, 「조선전기 장례문화와 歸厚署」, 『朝鮮時代史學報』 31, 조선시대사학회, 2004.
- 홍승기, 「高麗時代의 工匠」, 『震檀學報』 40, 震檀學會, 1975.
- 홍영의,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2010.
- 김경탁, 「개성 고려궁성 출토 막새기와 고찰」,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 박성진, 「고려궁성 출토 평기와의 속성 분석」,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 장남원, 「개성 고려궁성지 출토 도자기」,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홍영의, 「개경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窯場」, 『개경 고려궁성 남북
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4. 博士學位論文

강승호, 「朝鮮時代 雇工 研究」, 동국대학교, 2005.

박종진, 「高麗時代 賦稅制度 研究」, 서울대학교, 1993.

서성호,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학교, 1997.

송성안, 「高麗後期の 寺院手工業 研究」, 영남대학교, 1999.

오일순, 「高麗時代 役制의 變動과 雜色役」, 연세대학교, 1999.

이호열, 「朝鮮前期 住宅史 研究」, 영남대학교, 1991.

전영준,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동국대학교, 2004.

한기문, 「高麗時代 寺院의 運營基盤과 願堂의 存在樣相」, 경북대학교, 1995.